

# 차 O

미래의 희망 로스쿨  
LawSCHOOL

2018. NOV + DEC



11/12



-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국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세종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중앙대학교
- Sungnam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안양대학교

Even the darkest night will end and the sun will rise.

가장 어두운 밤도 언젠간 끝나고 해는 떠오를 것이다.

-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 LawSCHOOL 창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8  
11 + 12



04



12



61



발행일 2018년 11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이형규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 04 로스쿨 탐방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재균 원장
- 08 파워 인터뷰  
법무법인(유) 화우 이용해 변호사
- 12 로스쿨 핫이슈
- 14 SPECIAL REPORT
- 25 숫자로 보는 로스쿨
- 26 특별기고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해군 법무관 배연관
- 30 로스쿨 특파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신동운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정으뜸
- 34 로스쿨 생활백서  
특허·상표소송의 절대 강자를 찾아라!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 38 행복 로스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정성용 학생
- 41 BOOK
- 42 로스쿨 오피니언  
변호사·전 건국대 법대학장 김영철 교수
- 46 언론 속 로스쿨
- 52 건강멘토링
- 54 영화 읽어주는 변호사
- 58 문화가 산책
- 60 협의회 소식
- 62 OUT CAMPUS / LAW QUIZ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재균 원장

# “작지만 강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법무부는 제1~7회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을 공개했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은 4위에 랭크되었으며, 비서울 지역 로스쿨로는 유일하게 톱5 안에 들었다. 구재균 원장을 만나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아주대학교 로스쿨의 저력에 대해 물었다. editor. 박소희



**Q. 아주대학교 로스쿨의 교육목표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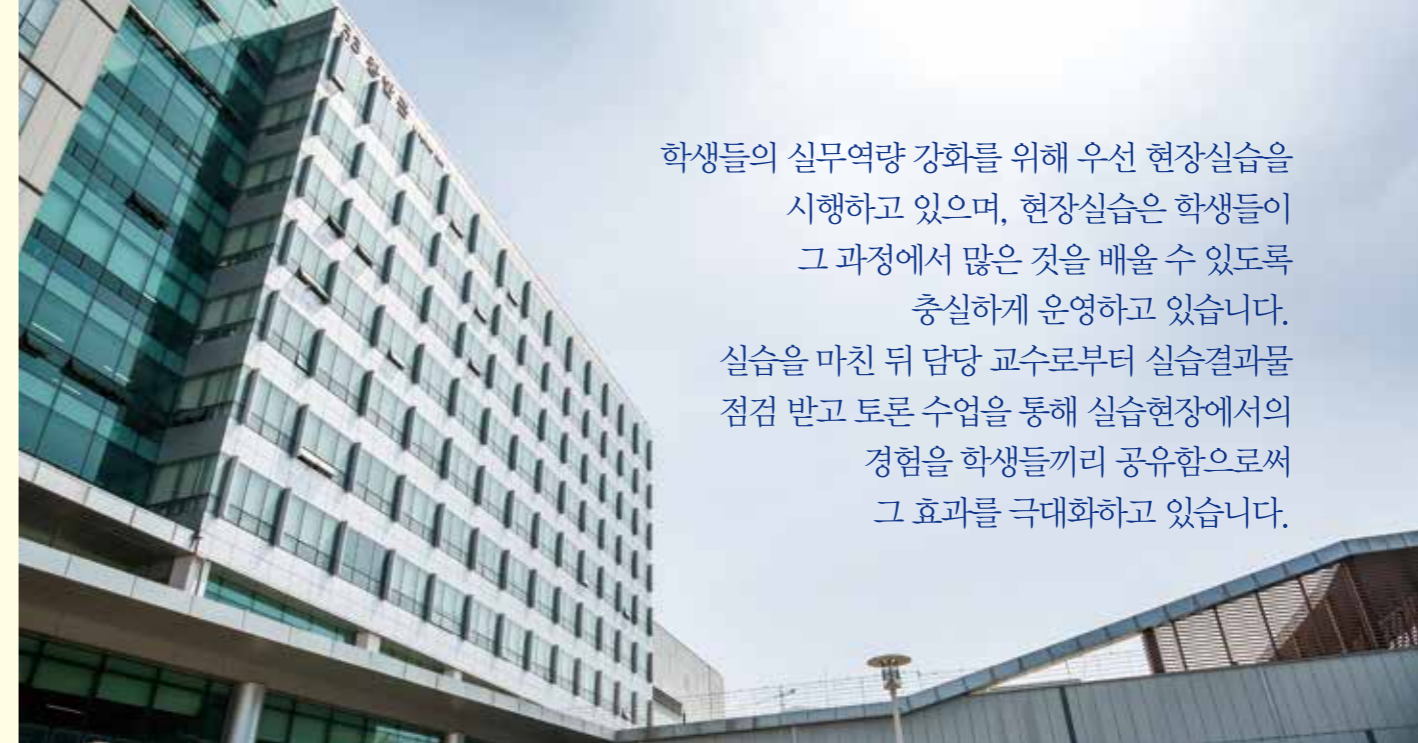
**A.** 아주대 로스쿨은 정의와 봉사를 지향하는 법률가, 창의와 혁신을 추구하는 법률가, 국제적 역량을 발휘하는 법률가 양성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주대 로스쿨은 체계적이며 충실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론 교육과 실무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적 분쟁해결 능력의 배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Q. 학생들을 위한 장학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아주대 로스쿨이 시행하고 있는 장학의 유형에는 복지장학·성적우수장학·봉사장학 등이 있습니다. 복지장학은 가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장학, 성적우수

**약 력**

- 전공 민사법
- 학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경 력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독일 Osnabrück 대학교 Visiting Scholar  
독일 Heidelberg 대학교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위원  
변호사시험 위원  
現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現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현장실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마친 뒤 담당 교수로부터 실습결과물 점검 받고 토론 수업을 통해 실습현장에서의 경험을 학생들끼리 공유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장학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 봉사장학은 원우회 임원 등 아주대 로스쿨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을 가리킵니다. 2018-1학기 기준 수혜인원은 수업료 100%가 26명, 수업료 90%가 8명, 수업료 80%가 5명(기타 비율에 따른 인원은 생략) 등 총 76명입니다. 입학정원이 학년당 50명(3개 학년 총정원 150명)이므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장학 혜택에 관한 기타 상세 내용은 아주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측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A.** 아주대 로스쿨에서는 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현장실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실습을 다녀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습을 마친 뒤 담당 교수로부터 실습결과물을 꼼꼼히 점검 받을 뿐만 아니라 토론 수업을 통해 실습현장에서의 경험을 학생들끼리 공유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대 로스쿨은 경기도 유일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 수원지방법원 및 경기중앙지방법변호사회와 연계하여 판례연구회, 공동학술대회, 법률 봉사, 찾아가는 법정 등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장·법원장 특강도 학교 측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기관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사실상 이를 단독으로 향유하고 있는 로스쿨은 아주대 로스쿨이 유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Q. '중소기업과 법'을 특성화 과목으로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중소기업법무센터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A.** 아주대 로스쿨은 앞에서 언급한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아주대가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에서 다수의 중소기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역적 여건, 아주대학교의 역량, 특성화 실천전략의 효용성 등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법무'를 특성화분야로 결정하였습니다. 2007년 11월에 개소한 중소기업법무센터는 경기도의 중소기업 관련 행정기관, 단체 및 연구기관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법률서비스 취약분야인 경기도 지역 내 중소기업 법무 분쟁 해결에 대한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중소기업들의 법률관련 문제 해결을 돕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법무센터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무에 대하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들과 각 전문분야의 변호사가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여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에는 중소기업법무센터 산하에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발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아주

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 지원자를 그 구성원으로 위촉하여 아주대 출신 CEO들에게 기업법무 관련 법률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중소기업법무를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해온 아주대 법전원 특성화 사업추진의 한 전략일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따른 실질적 이익을 학교 구성원 및 졸업생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기회가 될 것입니다.

**Q. 아주대 로스쿨은 학기 중 시험을 치를 때 학생에게 '개인식별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요?**

**A.** 학생들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마다 종전 시험 때와는 다른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번호라고 칭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듯합니다. 그 번호는 답안지에 '관리번호'라는 명칭하에 공란이 인쇄되어 있고, 학생들은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그 공란에 기재하게 됩니다. 답안 적성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답안지를 채점할 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그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 채점의 공정성 시비차단을 위해서 도입하였습니다.

**Q. 비법학사 출신을 위한 별도의 학습 과정이 있는지요?**

**A.** 아주대 로스쿨에 그러한 별도의 학습 과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법학사 출신의 로스쿨 학생도 한 학기나 두 학기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법률 공부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지만, 꾸준히 노력하여 법률공부에 적응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여 왔습니다.

**Q. 아주대 로스쿨은 입학정원이 50명인 소규모 로스쿨이라 운영에 따른 재정 압박이 타 로스쿨보다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비용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아주대 로스쿨은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24시간 전용 학습시설 등 다양한 학습시설의 관리 비용, 특강 유치 비용, 학생 활동 비용 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압박은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지요. 국가재정지원의 확대가 요망된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있는 아주대 로스쿨 출신 동문들의 기부금이 재정 압박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규모 로스쿨이 재정적으로는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으나, 중대형 로스쿨에 비하여 유리한 점도 존재합니다. 아주대 로스쿨은 규모가 크지 않기에 교수들이 학생 개개인의 성향을 알고, 그에 맞추어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적어낸 답안지를 첨삭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을 불러서 지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학 환경에서는 교수들에게 기대하기도, 또 교수들 스스로 실천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만, 우리 로스쿨에서는 많은 교수님들이 학생을 밀착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거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로스쿨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결정된 바를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로스쿨은 개원 시 만든 커리큘럼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고, 2018년부터 새로운 커리큘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지난 4월, 법무부에서 25개 로스쿨의 지난 7년간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발표했습니다. 아주대 로스쿨은 소위 SKY 로스쿨에 이어 4위를 기록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A.** 금년 4월에 공개된 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보고, 사실 우리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자는 역시 당해낼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은 노력, 그리고 열정이 대단합니다. 교수들은 강의 준비와 시험문제 출제, 그리고 채점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학생들은 이에 성실히 따라와 주었습니다. 교학팀에서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친절하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 진 데에는 아주대 로스쿨의 설립 과정에서 교수들을 적절하게 응원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젊고 열의에 찬 교수들이 다수 채용되었기에 원로 교수들이 두텁게 자리 잡고 있었던 서울권 다른 대학들과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중견교수와 다수의 젊은 교수 사이의 협력 내지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 초기에는 학생들 사이에 아주대 로스쿨의 커리큘럼 등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로스쿨 학생들이 제1회 변호사 시험에서 응시자 41명 전원이 합격하는 놀라운 결과를 내면서 상황이 달라졌지요. 학교 커리큘럼과 교수들의 지도를 잘 따라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됐고,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Q. 최근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뿐만 아니라 '취업률'도 좋은 법전원을 판단하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주대 로스쿨의 취업률은 어떠한가요? 또 학생들이 주로 어떤 분야로 많이 진출하고 있나요?**

**A.** 아주대 로스쿨은 매년 말에 취업률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100% 취업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80~90% 정도의 변호사들이 당해 연도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주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이나 공동법률사무소(합동법률사무소 포함), 단독법률사무소(개인법률사무소), 사기업 등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에 관한 기타 상세 내용은 아주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변호사시험 회수별로 상세 내용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Q. 로스쿨 원장으로서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관리'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별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고 있었던 작년까지의 경우와 공개하기 시작한 금년 이후의 경우는 원장들이 받고 있는 압박감의 크기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합격률 부진의 원인이 되어 로스쿨 원장이 교체된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격률을 구성하는 요소는 법률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능력, 교수님들의 강의능력 및 열의, 학교의 지원 등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합격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견되지만, 원장으로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우면서 동시에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Q. 사법농단 문제 등 법조계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로스쿨 학생들, 로스쿨을 졸업해서 법조인이 된 분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로스쿨 학생들이 졸업 후 법률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그 자격과 재능, '정의' 관념을 바탕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주대 로스쿨의 교육 목표 중 하나가 '정의와 봉사를 지향하는 법률가' 양성입니다. 아주대 로스쿨의 경우를 떠나 일반적으로 말해도 법과 정의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그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점이 주요 요인으로 들어질 수 있겠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법조인들은 사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다고 봅니다. 법조인들은 개인적 영달이나 집단적인 이익 추구 보다는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이용해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 “미디어 업계와 법조계의 가고 역할을 하고 싶어”



25년간 방송사 PD와  
드라마 제작사로서 활약해오다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가 된  
이가 있다. 최근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한 이용해 변호사의 이야기다.  
메가폰 대신 법전을 들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용해 변호사를 만나봤다.

editor 박소희

**Q. 미디어 업계를 떠나 법조계로 진로 변경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법전문 진학을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변호사로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새로운 자극’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SBS PD로 입사한 후, 20여 년 넘게 PD생활을 하다 보니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제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았고, 고갈되어간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방송 출연자였던 한 분이 로스쿨 진학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동안 방송 연출을 하면서 출연자로 변호사들을 자주 만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제가 법조인이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미디어 산업을 잘 아는 제가 변호사가 된다면, 오랜 경험을 살려 대형화·글로벌화 되고 있는 미디어 산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고민 끝에 새로운 도전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Q.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A.** 회사 일을 병행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낮에는 회사 운영과 방송 제작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 밤에는 입시 준비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만만치 않았어요. 확실히 젊었을 때 공부하는 것과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공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웃음). 다행히 리트가 단순히 암기 위주의 시험 방식이 아니라 논리력·사고력 중심의 시험 방식이어서 오랜 사회 경험이 로스쿨 입시준비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Q.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50대 만학도의 로스쿨 생활에 대해 들려주세요.**

**A.** 사실 로스쿨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50세가 다 되어서 다시 학교를 다닌다는 설렘이 반,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법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걱정이 반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걱정이 줄어들게 마련인데, 오히려 반대로 걱정만 커져갔습니다. 나이가 가장 적은 동기와 함께 다니면 ‘아들과 아버지’란 이야기를 듣게 되는 50대의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는 건 생각과 달리 쉽지 않았어요. 영문학을 전공한 저는 대학 시절 법학 교양 과목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나이탓에 암기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장시간 공부 후에도 책을 덮으면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웃음).

입학 첫해부터 좌절했죠. 대학을 갓 졸업한 어린 학생이거나 사법시험을 여러 차례 치른 경험이 있는 로스쿨 동기들 사이에서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로스쿨은 나에게 무리라고 판단되어 자퇴서를 내려고 할 때마다 친하게 지내던 동기들이 “형처럼 로스쿨 취지에 걸맞은 사람이 변호사가 돼야 한다”며 용기를 북돋아주며 말했습니다. 최고령이었기에 다른 만학도들에게 귀감

이 되고 싶기도 했어요. 한 해를 오기로 버티다보니, 점차 법학이 친숙해졌고 공부도 재미있어졌습니다.

향후 법학지식을 무기로 미디어산업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분야에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은데 법을 공부하니 미디어 종사자들의 고민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Q. 로스쿨에서 맞이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나요?**

**A.** 변호사 시험을 석 달 앞두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망막박리’ 증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주중엔 로스쿨생, 주말엔 제작사 대표로서, 매주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몸을 혹사한 영향과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된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시험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지만, 입원해 있을 당시 저랑 늘 같이 공부하며 친하게 지낸 동기가 저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최신 판례를 읽어줬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계속 용기를 주었습니다. 동기들 염려 덕분에 시력을 회복한 뒤 간신히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Q. 법무법인(유) 화우는 어떤 로펌인가요? 또 화우에 합류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무법인(유) 화우는 송무분야 전문인 법무법인 화백과 기업자문 분야 전문인 법무법인 우방의 합병으로 탄생된 로펌입니다. 또한 관세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각 분야의 전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합병과 전문분야 법인들의 설립으로도 알 수 있듯이 유대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법무법인들과 차별화가 되며, 사시와 로스쿨 출신 직원 모두 인화단결이 잘 되고 정도를 걷는 법무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 조세, 인사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 온 화우는 기존에 강점을 갖고 있던 전문분야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분야 외 국제중재·국제조세 부문도 화우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입니다. 글로벌 로펌 평가기관 체임버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곳에서 선정한 최우수 등급(Band 1 - the Elite) 로펌 동맹그룹 중 테라렉스(TerraLex), 인터렉스 그룹(Interlex Group) 등 2곳에 화우가 속해 있을 정도로 화우는 세계적인 로펌입니다.

화우 같은 전문화되고 훌륭한 인력들이 많이 있는 로펌에서 일한다면 저의 능력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나이 많은 저를 뽑아준 고마운 로펌입니다(웃음).

법은 어른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른이란 종합적인 사고력을 갖춘 사람을 일컫는다고 생각합니다.

풍부한 사회 경험과 지적 배경은 종합적인 사고력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타 업계에서의 경험은 법을 이해하고 집행하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 Q.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A. 저는 미디어산업과 관련된 10여 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문화콘텐츠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문화콘텐츠팀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PD, 작가, 감독, 가수, 배우, 영화제작자 등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콘텐츠제작권설정, 방송포맷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의 상생협력, 미디어기업 투자자문, 미디어 업계 제작환경 개선 등 문화산업계가 맞닥뜨리는 법률적 쟁점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Q.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각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인데요. 미디어 업계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이 현재 변호사로서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A. 저에게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미디어산업 종사자들은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은 물론 유통 단계에서도 다양한 법률적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미디어업계에는 감독, 작가, 외주제작사, 방송사, 기획사, 연기자, 가수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며 때로는 협업하고 때로는 반목합니다.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업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동안의 미디어 업계에서의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 Q. 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A. 법을 공부하면서 이전에 PD, 제작자로서 가졌던 고민들을 이제는 제3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에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나 의뢰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제가 미디어업계 출신이어서 그런지 미디어업계 종사자들이 저를 같은 편이라 믿고 편하게 상담할 때 가장 기쁩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하는 게 있죠 (웃음).

### Q. 반면에 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어려운 점이라면 미디어업계와 법조계가 많이 달라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네요. 우선 사고측면에서는, 미디어업계는 무에서 율을 창조하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발상이 중요하지만, 법조계는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서면작성 측

면에서는, 미디어업계는 창의적인 핵심아이디어만 수공되면 디테일은 크게 따지지 않아요. 반면 법조계는 문구 하나하나 서면의 디테일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측면에서는, 미디어업계는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반면에, 법조계는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요. 여전히 적응 중이긴 하지만, 적응만 되면 양 업계를 잘 아는 제가 미디어 업계와 법조계의 가교역할을 하며, 양쪽 업계에 모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Q. 변호사로서의 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려주세요.

A. 저는 현재 법무법인 화우 내 문화 콘텐츠팀에서 팀 내 다른 변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방송포맷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포맷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방송포맷산업 발전 및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포맷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미디어 산업과 미디어 기업들이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 콘텐츠 시장의 레드오션화로 인해, 제작사와 방송사업자들은 출혈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은 중국 시장이 있어 버틸 수 있었지만, 중국시장이 막히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OTT(인터넷 TV서비스, Over The TOP)등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IP만 확보되면 넷플릭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 IP를 판매할 기회가 생겼고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제작사 및 방송사가 대형화·글로벌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IP자산의 보호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 이 점에서 법률가들이 지식재산권(IP)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미디어기업들이 대형화·글로벌화할 수

있도록 정확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 유치가 필요하며, 한국 미디어기업들간의 M&A에 의한 대형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 작가, 감독 등 창작자들의 권리 강화와 주 52시간 노동이슈도 현 시점에서의 법률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Q. 과거의 이 변호사님처럼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지만 선뜻 로스쿨에 진학할 용기가 없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법은 어른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른이란 종합적인 사고력을 갖춘 사람을 일컫는다고 생각합니다. 풍부한 사회 경험과 지적 배경은 종합적인 사고력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타 업계에서의 경험은 법을 이해하고 집행하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늦은 나이에 법학을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방대한 양의 법학을 암기하려고만 했다면 결코 로스쿨 생활을 버텨내고 변호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업계에서의 풍부한 사회 경험은 법률과 판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사고력을 갖추게 도와주었습니다. 따라서 늦게 법률가의 길에 도전하는 분들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계를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법률가가 된다면 좀 더 나은 법률서비스가 가능하고, 이것이 로스쿨 설립의 진정한 취지에 걸맞은 것이 아닐까요? **창**

#### 여기서 잠깐!

#### 이용해 변호사가 소개하는 법무법인 화우 입사 프로세스

화우는 자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수한 지원자들 중에서 신입 변호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이든 사법연수원 출신이든 이 점은 마찬가지죠. 로스쿨의 경우 여름(로스쿨 2학년 대상)과 겨울방학(로스쿨 1, 2학년 대상)에 각각 30~40여명의 인턴 참가자를 선발한 뒤 각각 2주간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법연수원의 경우에는 매년 2~3월에 인턴 희망자를 모집하여 인턴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서면작성과 집단토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원자들을 평가하고, 인턴과정 우수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요. 이후 학부전공과 전공분야 경험, 로스쿨·사법연수원 성적, 인성 등을 검토한 뒤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로클릭(법무관이나 재판연구원) 출신은 경력 2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클릭 출신은 경험을 고려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화우의 전문인력 채용시스템의 자랑은 나이, 성별, 출신학교 등에 대한 차별없이 오로지 전문성과 영입이후 성장,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채용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화우의 채용원칙에 부합하는 인재상이라면 그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사 희망자는 화우 홈페이지(<http://www.hwawoo.com/>)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고려대학교 법창의센터 및 창업보육 플랫폼 개소식 열려

지난 10월 2일(화) 방배동 유종빌딩에서는 高麗精于 창업보육 플랫폼(KJLIP: Korea-Jungwoo Law Incubating Platform) 개소식이 진행됐다. 지난 9월 고려대학교 법전원은 법률가의 전문화 및 법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창의센터(CLC: Center for Law & Creativity)를 설치한 바 있으며, CLC의 핵심사업인 전문분야 법률가 창업지원을 위해 방배동에 고려정우 창업보육플랫폼을 설치하였다. 법창의센터(CLC) 및 고려정우창업보육플랫폼 개소식에는 명순구 법학전문대학원장, 한상대 법창의센터 소장, 이관영 연구부총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이승재 법과대학교우회장, 이동호 전 내무부장관, 정승우 유종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고려정우 창업보육플랫폼은 전문성을 배양한 법률가들을 국내외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시키기 위해 창의적 긍정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대학교 법전원, 제1회 'SNU Law 명사와의 대화' 개최해

서울대학교 법전원은 지난 9월 20일(목)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제1회 SNU LAW 명사와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소장이 연사로 초청되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송상현 전 ICC 소장은 어린 시절 한국전쟁을 겪은 것을 계기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자신의 경험담과 ICC와 같은 국제기구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할 것을 각오하는 사명 의식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사안이 주어지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법학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할 것을 당부하며 이번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SNU LAW 명사와의 대화'는 기존의 강연형식에서 탈피하여 사전에 수합한 학생들의 질문을 장승화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초대 연사의 대담으로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출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국제해양법재판소 22주년을 맞이해 개최된 한국해로연구회 해성해양강좌

이화여자대학교 법전원은 지난 9월 18일(화) 법학관 132호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22년'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은 법전원 주관의 공공리더십과정의 연계전공인 국제법 수업 시간에 진행되었으며, 재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석 법전원 교무부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후 강연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배종윤 교수는 한국해로연구회의 활동사항 및 해성문화강좌의 취지를 설명하며, 해양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뒤이어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설립과정과 사건·판례를 소개하였고,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질의응답으로 강연이 마무리 되었다. 사진출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재학생, 졸업생, 교수님들이 함께하는 2018 인하대학교 법전원 어울림의 밤



지난 9월 14일(금) 인하대학교 로스쿨관 지하에서는 '2018 인하대 로스쿨 어울림의 밤'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 한진우 인하대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법전원 교수, 졸업생,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밴드 동아리 '소멸시효'의 공연을 시작으로 조명우 인하대 총장, 1기 졸업생 안재범 변호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인하대학교 법전원의 발전과정 및 현황을 소개하는 발표의 자리도 마련되었으며, 이후에는 박시환 석좌교수의 축배제와 함께 만찬이 진행됐다. 사진출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남대학교 법전원 학생들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 요청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씨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김 씨의 사건은 친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소재로 세간의 이목을 끈 바 있으며, 김 씨는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사건 발생 하루 뒤 자수했으나 검증을 앞둔 상태에서 동생 대신 감옥을 가기 위해 거짓 자백한 것이라고 밝히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김 씨는 18년 복역기간 동안 꾸준히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에 전남대학교 법전원 학생 192명은 무기수 김 씨가 다시 한 번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심을 요청했다. 김 씨에 대한 재심 논의는 지난 2014년에 시작했으며, 4년 만에 재심이 확정되었다. 무기수에게 재심이 확정된 것은 김신혜씨 사례가 최초이다.



# 2018년 변경된 중국의 법조인 선발제도



중국정법대학 초청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리포트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



지난 9월, 중국 최고의 법학 인재 양성 교육기관인 중국정법대학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여러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2018년 새로이 변경된 중국의 법조인 선발제도는 한국 로스쿨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많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1. 국가통일사법고시 폐지와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의 도입

중국의 '국가통일사법고시제도'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되었다. 사법고시는 연 1회 실시되었으며, 변호사자격시험과 법관, 검찰관 시험을 통합한 시험이었다. 이 시험은 2003년부터 홍콩과 마카오에 개방되었고 2008년부터 대만에 개방되었다. 사법고시 내용은 주로 법학 이론, 법학응용, 현행 법률규정, 법률실무 및 법률 직업윤리이고, 출제범위는 매년 사법부에서 제정하고 발표한 <국가사법고시대강>을 기준으로 하였다. 국가통일사법고시는 매년 9월 중에 2일에 걸쳐 객관식과 단문형 주관식으로 실시되고 매년 전국적으로 약 35~40만 명이 응시하여 평균 60점 이상(600점 만점에 3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합격되었다. 중국의 사법고시는 지난 16년 동안 실시되었으며, 매년 응시자의 약 10% 내외의 법률 종사자를 배출했다. 합격률을 보면 크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응시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 매년 최소 40만명 정도가 응시했다. 사법고시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대만과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대륙에서 모두 64만9000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고사장만 537개에 이르렀다.

중국에서는 2018년에 국가통일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대신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종래에는 전공과 관계없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모두 사법고시를 볼 자격이 있었지만 중국의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는 법학 전공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위해 두 개의 통로를 만들었다. 법률직업자격고시의 응시자격 요건으로 4년제 대학의 법학 전공자는 당연히 시험을 볼 수 있고 비전공자인 경우도 추가로 법률석사과정을 수료하거나, 3년 이상 법률 관련 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는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에서 학부의 비법학전공자가 법률석사 학위 취득한 경우에는



중국로스쿨포럼 한국 참석자(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안강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바로 우리나라의 로스쿨 졸업생과 비슷하다.

## 2.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제도의 완성에 관한 의견

2015년 발표된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제도의 완성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에 의하면, 법률직업인원이라는 통합적 지위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함께 법률직업인원의 범위 및 자격취득요건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사법고시제도가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제도로 전환된다.

**첫째, 법률직업인원의 범위가 재정의 된다.** 동의견에 의하면 '법률직업인원'은 입법·법집행·사법·법률서비스 및 법률교육연구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집단을 말하며, 기존의 법관, 검찰관, 변호사뿐 아니라, 공증인·법률자문·중재인 및 정부부서 중 행정처벌결정과 행정소송, 재결 등에 관여하는 모든 인원들을 포함한다. [의견]은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 또한 국가통일법률직무자격고시를 통해서 직무자격을 취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둘째, 취득자격 요건에 관한 부분이 변경된다.** 동의견에서는 법률직업인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전일제로 법학을 전공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전일제로 비법학을 전공한

중국에서는 2018년에 국가통일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대신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종래에는 전공과 관계없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모두 사법고시를 볼 자격이 있었지만 중국의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는 법학 전공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위해 두 개의 통로를 만들었다.

다음 법률석사·법학석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전일제로 비법학을 전공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법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법고시를 볼 수 있었던 비법학전공자는 앞으로 법학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법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지 않고서는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에는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온 '법률석사(학부에서 비법학전공자)라는 교육과정'이 있다. 이는 석사과정에서 비법학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들에게 법률실무와 적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통해 법률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특수과정이다. 그동안 '국가사법고시실시방법' 제5조에 의해 비법학전공자도 법률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면 법학전공자와 동등하게 시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법고시 참가자격에 대한 전공의 범위는 사실상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국가통일법률직무자격고시에 응시하려면 비법학 전공자들은 법률석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법률석사학위는 사실상 로스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중국은 기존의 법학전공자에 대한 법률고시를 유지하는 한편, 또 다른 석사교육과정을 요건



#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



중국로스쿨포럼 참석자

으로 비법학전공자에 대한 법학교육을 통하여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려는 것이다.

### 3.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 제도

2018년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를 실시하는 첫 해로 사법부의 발표에 의하면 사법부의 입시요강은 도합 18개 시험과목을 열거했으며 동시에 입법변화 등에 적응하여 여러 과목의 지식점에 대해 보완했다. 사법부가 공고한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 실시방법>에 따르면 2018년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의 내용과 명제범위는 사법부에서 올해 공고한 입시요강을 위주로 한다. 수험생들이 관심하는 시험내용 외에 2018년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의 시험지구조, 응시원서 제출과 시험시간, 완화조건정책, 보통고등학교 올해 졸업생 신청정책 등 규정에 관해 올해 입시공고에서 확정하게 된다.

'실시방법'규정에 따르면,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는 매년 한차례씩 진행하며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객관식 문제 시험성적이 합격되어야만 주관식 문제 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시험답안은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채점을 하며 사법부에서 시험성적 및 합격 점수 선을 확정하게 된다.

2018년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 입시요강은 시험

설명과 시험과목, 지식점 두개 부분으로 나뉜다고 한다. 시험과목은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 조정위원회(사전 연수지도위원회)에서 연구하여 확정한 것으로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의 시험과목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법치이론, 법리학, 헌법, 중국법률사,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중재제도 포함), 행정법과 행정소송법, 경제법, 지식재산권법, 상법, 국제법, 국제사법, 국제경제법, 환경자원법, 노동사회보장법, 사법제도와 법률직업도덕 등 18개가 포함된다.

입법변화, 사법체제기제 개혁실천과 법학이론 연구성과에 적응하여 요강은 또 형법, 형사소송법, 중국법률사, 지식재산권법, 환경자원법, 노동사회보장법 등 과목의 지식점을 보완하기도 했다.

동시에 2018년 3월 말전의 법률법규 제정 및 개정에 의하여 요강 부록의 법률법규 목록을 확정했다.

#### [참고] 2018년도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 시행일정

○ 객관식 시험 : 2018년 9월 22일(토)

구분	시간	시험과목
제1시험	08:30~11:30 (180분)	중국어 특성 법률, 판례, 헌법의 지배, 중국의 법적 역사, 국제법, 사법 제도 및 법적 윤리,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과 행정 소송법과 사회주의의 이론
제2시험	14:00~17:00 (180분)	민법, 지적 재산권법, 상법, 경제법, 환경 자원법, 노동 사회 보장법, 국제법, 국제 경제법, 민사소송법 (중재 제도 포함)

○ 주관식 시험 : 2018년 10월 20일(토)

구분	시간	시험과목
주관식	08:30~12:30 (240분)	헌법, 형법, 형사 소송법, 민법, 상법, 민사 소송법 (중재 제도 포함), 행정법 및 행정 소송법, 사법제도 및 법률 전문 윤리 등 사회주의 법칙 이론

지난 9월 18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국회의원의 주최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주장은 로스쿨 출범 이후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지만 우리나라 실정과는 맞지 않고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많았다. SPECIAL REPORT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 한국과 일본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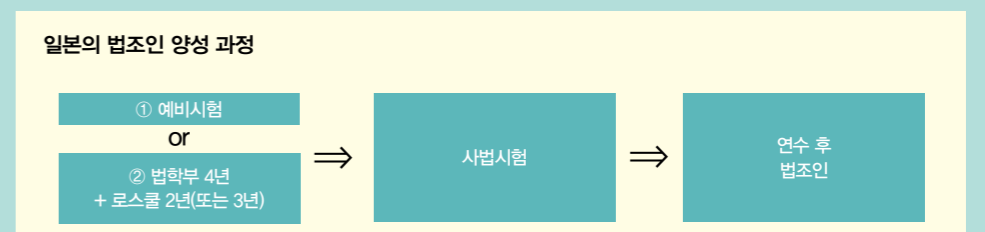
- 일본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기에 앞서 양국의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구분	한국	일본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가주의(정부)</li> <li>신청한 41개교 중 25개교 인가(2009년) - 16개교 탈락(약 3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칙주의</li> <li>74개교 신청, 74개교 설치(2004년)</li> <li>36개교 운영(38개교 폐교 또는 모집중지 약 51.4%)</li> </ul>
입학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당 40~150명, 총 정원 2,000명</li> <li>인가기준이 충족되어도 정원 충족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당 300명 이내</li> <li>인가기준 충족 시 자율 정원충원 가능</li> </ul>
법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5개 로스쿨 인가교는 법학과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스쿨과 함께 법학부 유지·운영</li> </ul>
학생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전형 5% → 7% 확대</li> <li>지역인재 선발 10~20% 선발</li> <li>비법학 1/3 이상 선발</li> <li>타교출신 1/3 이상 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자율 선발</li> </ul>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금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의무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자율 지급</li> </ul>

※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로스쿨을 준칙주의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시험도 자격시험으로 운영되고 있음.  
※ 무엇보다 일본 로스쿨 운영 대학은 법학부를 함께 두고 있어 대학재정에 큰 손실이 없다.

#### ■ '예비시험'이란?

- 경제적 사정, 이미 사회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는 등의 이유로 법과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자에게도, 법조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일본에서 만든 제도이다. 일본은 예비시험을 통해 로스쿨 수료자와 동등한 학식과 응용능력 및 법률에 관한 실무기초 소양을 가지고 있는 지 판정하여 그 합격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사법시험법 제4조, 제5조 제1항에 의거).



■ 한국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도 도입론과 이에 대한 반박

– 한국은 「변호사시험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2009년 「변호사시험법안」(2009.2.27.)을 시작으로 몇몇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통해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논거1] 일본도 예비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도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에 의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반론]

– 일본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자격 취득’이라는 예비시험 본래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도입 시에는 법과대학원에 갈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회인을 위한 예외적 조치로 인정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우수한 법학부 학생들을 위한 코스로 전락했다.

– 즉, 일본의 예비시험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시험이라기보다 대입경쟁을 갓 뚫고 올라와 ‘시험 기술’이 뛰어난 20대의 대학졸업생들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 시험만으로 법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 것이다.

–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는 수험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법과대학원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식·소양을 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시험 과목이 구 사법시험보다 더 늘어났다. 또한 정규코스가

■ 일본 예비시험 합격률 추이

연도	출원자	수험자	최종합격자	합격률
2011	8,971	6,477	116	1.8%
2012	9,118	7,183	219	3.0%
2013	11,255	9,224	351	3.8%
2014	12,622	10,347	356	3.4%
2015	12,543	10,334	394	3.8%
2016	12,767	10,442	405	3.9%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회로’여서 극소수의 인원만 합격(평균 3% 내외)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 이렇듯 예비시험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배치되는 면이 있고, 예비시험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응시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예비시험 쏠림현상이 나타나 로스쿨 제도의 정착 및 로스쿨의 정상적인 교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논거2] 예비시험 제도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다?

–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2017.12.29. 오신환 의원 등 10인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형편상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지 못한 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약자 및 전문분야에서 오랫동안 실력을 키운 자를 법조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9.4.27. 강용석 의원 등 78인의 「변호사시험법안(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

[반론]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예비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동등한 학식, 그 응용능력 및 법률에 관한 실무의 기초적 소양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

– 하지만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는 시험이 되려면 응시자격에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안 된다. 일본에서도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경제적 약자’로 제한하고자 했으나 ‘경제적 약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 무엇보다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는 입학정원의 일정비율 이상(각 교 입학정원의 7% 이상)을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 제도를 두고 있으며, 로스쿨 정원의 30%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 일본 사법시험과 예비시험 응시자 수



대다수의 로스쿨은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사유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이 법조인으로 진입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논거3] 미국에도 일본의 예비시험과 같은 비로스쿨 트랙(baby bar)이 있다?

–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에서도 미국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제한하는 주는 전체 50개 주에서 19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31개 주에서는 비인증 로스쿨이나 통신강좌 이수든 물론 외국의 법과대학 졸업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반론]

–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일본에는 예비시험, 미국에는 ‘베이비 바(Baby Bar)’라는 우회로가 있으므로, 국내에도 약자들을 위한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베이비 바’ 시험

은 미국 전국 및 주 변호사협회에서 인증을 받기 어려운 로스쿨, 인증 받은 로스쿨에 비해 교육여건이 필연적으로 차등적인 방식의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이 1학년 때 학업성취도를 평가받는 시험이다.

– 특히 미국의 비 로스쿨 트랙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에서, 연방제라는 특수한 환경과 외국에서 법학을 공부하고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즉, 외국에서 일정한 법학 공부를 하고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국의 기준에서 응시자격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다시 말해 나머지 3년의 학업과정을 마치고 자격시

# 로스쿨 제도개선 및 지역 로스쿨 발전 방향

3개 거점 국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연합 세미나를 마치며

험으로 운영되는 주 변호사시험(GBX: General Bar Exam)을 대비하기 전에 미리 학업검증을 거치는 취지이지, 우리나라의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예비시험처럼 3년의 전문대학원 과정을 우회하는 통로로 마련해주는 것은 아니다.

### [논거4]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공무원인 판사 및 검사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임용한다고 할 때, 변호사시험은 단순한 자격시험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시험의 성격도 갖는다. 그런데 공무원을 뽑는 성격의 시험에 특정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 로스쿨 졸업자와 동등한 법적 지식과 활용능력을 갖춘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반론]

- 법조인은 이에 상응하는 전문교육과 전인교육이 필요하며, 시험이라는 획일화된 제도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직역이 아니다.
- 법조인과 유사한 전문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의사·한의사 등의 경우에도 수 년 간의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예비시험과 같은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를 고려해볼 때 법전원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자격 요건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판·검사의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인 국·공립 병원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전문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 ■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및 결론

- 정책토론회 당일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도 예비시험 도입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임을 지적했다.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한 현시점에서 예비시험은 로스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예비시험이 로스쿨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로스쿨 정착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로스쿨에서는 이미 장학금·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약자를 배려하고 있다는 점 등 예비시험이 국내에 도입되기엔 논란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 또 다른 토론자인 법원행정처의 관계자는 예비시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한 논의, 예비시험 합격자들은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점, 현재에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데 예비시험으로 그만큼의 인원이 추가되면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교육 체계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도입 10년이 지나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법조인 양성 제도의 중심축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서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과 그간의 운영과정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지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일으키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10월 25일(목)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충북대 법학연구소,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연합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과 지역 로스쿨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1.

제주대, 충북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18년 10월 25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로스쿨 제도 개선 및 지역 로스쿨 발전방향을 위한 거점 국립대 연합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7년 12월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연합 세미나에는 3개 대학 로스쿨 교수들과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10년 동안의 로스쿨 운영과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현황을 평가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나갔다.

## 2.

참석자들은 로스쿨 제도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도입되었다는 점,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입과 지역적 다원화, 법조 직업 진출의 다변화 등 '시대의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가의 배출'을 통한 사법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의 법률생활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그러나 로스쿨이 진정한 직업윤리관을 가진 전문적인 법률가로서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육기관이자 특성화와 국제화를 안착한 '한국형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하는 데에는 반드시 지금 직면한 여러 문제를 타계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 3.

참석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이 '교육을 통한 공익을 실현하는 법조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하 과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변호사시험은 통상적인 전문 법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절대평가에 따른 자격시험화' 또는 '졸업생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대전환되어야 한다.

**1) 변호사시험의 고유 기능과 취지 회복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 변호사시험은 통상적인 전문 법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절대평가에 따른 자격시험화' 또는 '졸업생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대전환되어야 한다.
- 로스쿨은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라는 구조적 장애물에 봉착하여 '합격자 배출 학원'으로 전락하여 교육을 통한 법조 인력의 양성이라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지역 로스쿨의 설립 취지에 따라 법조인 양성을 교육하는 곳에 각각 변호사시험장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법학전문대학원 취지에 맞도록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 변호사시험 위주로 로스쿨 교육이 편향되어 특성화와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이 폐강되거나 취지와 달리 시험과 인접한 과목으로 변경되어 교육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 로스쿨의 특성화 목표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수를 늘리는 방법, 또는 특성화 분야 이수자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로서의 자격 인정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의 부담이 로스쿨 평가와 입시에 대한 가중됨으로 교육이념에 따른 로스쿨 운영이 어렵다. 그러므로 로스쿨 입시와 평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지방 거점 로스쿨이 지역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생 선발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로스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

-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위임받은 교육기관'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책충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다.
- 「법학전문대학원법」의 국가, 대학, 그 밖의 법조인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상호협

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재정'에 대한 협력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 간 균형'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 지역 내 법학전문대학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재정책충의 의무가 있다.
- 로스쿨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법률적 이슈에 대한 선조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와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로스쿨의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진출을 강화해야 한다.**

- 각 지역 로스쿨에서는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자 로스쿨생의 임상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리걸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리걸클리닉센터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로스쿨 졸업 후에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진로탐색 과정과 연계하여 온라인 법률상담, 찾아가는 법률상담, 공익소송, 지역민 대상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법률 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그러나 '리걸클리닉지원사업'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전면 백지화됨에 따라 생활법률서비스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법률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로스쿨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교육기관이자 지역 친화적인 생활법률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각기 운영되는 지역 법률 서비스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관이 법률전문가를 적극 고용하고 로스쿨생 실무실습에도 협력하여 지역의 법률자문 및 소송 업무를 전담하고 지역민의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법률 직역을 발굴하는 데에 동참하여야 한다.
- 로스쿨은 교육기관이자 연구기관, 사회봉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로스쿨은 다양한 경험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새로운 법률 분야 발굴 및 법률소비자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전체의 법치주의 강화에 이바지해야 한다.

**4.**

3개 거점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늘 연합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우수한 법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창**

로스쿨은 다양한 경험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새로운 법률 분야 발굴 및 법률소비자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전체의 법치주의 강화에 이바지해야 한다.

2018. 10. 25.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심표



최근 교육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 소개 및 홍보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였다. 영상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인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가능해졌으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법조인이 과거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발과 장학금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고, 블라인드 면접, 선발결과 공개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양한 전공배경을 지닌 법조인 배출 가능  
출신대학별 합격자/입학자의 다변화  
취약계층 선발을 입학자의 7% 이상으로 확대  
등록금 총액의 34.9% 장학금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입학전형



※ 영상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info.leet.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현황

접수기간 : 2018. 10. 1.(월), 09:00 ~ 5.(금), 18:00

대학명	모집 정원							지원 현황							경쟁률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강원대				37	3	40	40				193	21	214	214				5.22	7.00	5.35	5.35
건국대	37	3	40				40	123	8	131				131	3.32	2.67	3.28				3.28
경북대	55	5	60	56	4	60	120	213	23	236	215	15	230	466	3.87	4.60	3.93	3.84	3.75	3.83	3.88
경희대	55	5	60				60	422	48	470				470	7.67	9.60	7.83				7.83
고려대				111	9	120	120				361	27	388	388				3.25	3.00	3.23	3.23
동아대	37	3	40	37	3	40	80	336	25	361	316	21	337	698	9.08	8.33	9.03	8.54	7.00	8.43	8.73
부산대	65	5	70	46	4	50	120	198	18	216	137	11	148	364	3.05	3.60	3.09	2.98	2.75	2.96	3.03
서강대	19	2	21	18	1	19	40	130	5	135	151	7	158	293	6.84	2.50	6.43	8.39	7.00	8.32	7.33
서울대	139	11	150				150	440	55	495				495	3.17	5.00	3.30				3.30
서울시립대	45	5	50				50	236	30	266				266	5.24	6.00	5.32				5.32
성균관대				111	9	120	120				343	22	365	365				3.09	2.44	3.04	3.04
아주대	23	2	25	23	2	25	50	192	14	206	219	18	237	443	8.35	7.00	8.24	9.52	9.00	9.48	8.86
연세대				111	9	120	120				283	31	314	314				2.55	3.44	2.62	2.62
영남대	32	3	35	33	2	35	70	215	26	241	230	19	249	490	6.72	8.67	6.89	6.97	9.50	7.11	7.00
원광대	30		30	25	5	30	60	277		277	216	39	255	532	9.23		9.23	8.64	7.80	8.50	8.87
이화여대				93	7	100	100				383	32	415	415				4.12	4.57	4.15	4.15
인하대	21	4	25	25		25	50	138	26	164	168		168	332	6.57	6.50	6.56	6.72		6.72	6.64
전남대	51	9	60	60		60	120	208	42	250	266		266	516	4.08	4.67	4.17	4.43		4.43	4.30
전북대	37		37	37	6	43	80	238		238	241	40	281	519	6.43		6.43	6.51	6.67	6.53	6.49
제주대	18	2	20	19	1	20	40	76	6	82	60	3	63	145	4.22	3.00	4.10	3.16	3.00	3.15	3.63
중앙대	46	4	50				50	264	27	291				291	5.74	6.75	5.82				5.82
충남대	50		50	43	7	50	100	162		162	143	21	164	326	3.24		3.24	3.33	3.00	3.28	3.26
충북대	40		40	25	5	30	70	212		212	131	15	146	358	5.30		5.30	5.24	3.00	4.87	5.11
한국외대	26	4	30	20		20	50	126	13	139	107		107	246	4.85	3.25	4.63	5.35		5.35	4.92
한양대				92	8	100	100				312	35	347	347				3.39	4.38	3.47	3.47
합계	826	67	893	1,022	85	1,107	2,000	4,206	366	4,572	4,475	377	4,852	9,424	5.09	5.46	5.12	4.38	4.44	4.38	4.71

※ 경쟁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집계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나라가 제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해군 법무관 배연관

“나라가 제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라는 말을 다들 한 두 번은 어딘가에서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로도 자주 쓰이고, 인터넷 뉴스 기사에도 한 탄이나 자조를 섞어서 댓글로 다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게는, 이 발언을 직접 들려준 사람 가운데 특별한 기억을 남게 해 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있을 수 없는 그 분은 제가 해군법무관으로 임관한 후 국선변호부장으로 해병대사령부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기간에 국선변호를 맡았던 피고인입니다. 제게 배정된 피고인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첫 인사말이 바로 “나라가 제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냉소 가득한 한탄이었습니다. 변명도 아니고, 살려달라는 애원도 아니고 이런 냉소적인 비아냥을 첫 인사말로 하다니... 이번 재판은 쉽지 않으리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숨을 쉬며 한 마디씩 이어나간 그 피고인은,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있고, 이렇게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이유를 가족과 군대, 그리고 국가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 분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어차피 유죄 판결과 징역형이 나올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의욕을 상실하고 있었고, 국선 변호인인 제가 찾아오는 것도 시간낭비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권법무관이나, 법무참모, 군검사 보직을 맡아 법률상담이나 신상 상담을 하거나 수사를 하면서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함께 자신의 어려운 사연을 이야기하며 상관을 탓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이렇게나 의욕이 없고 비 협조적인 피고인은 처음이었던지라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 피고인과 계속 이야기를 시도하자, 피고인의 냉소적인 태도 속에는 법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자신을 지켜주거나 보호해주는 커녕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마음 속에는 법과 법률가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이 가득하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고인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이 저를 믿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한 저는, 공판기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와 호소문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국 공판기 일 전날,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피고인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지휘관을 포함한 상관들과, 피고인의 선량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선후임 및 동기들, 그리고 피고인을 포기하지 않은 가족들의 탄원서,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편지 등을 모아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며 피고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간곡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피고인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줄여 가며 전해 준 편지들이고, 제가 한명씩 찾아가 부탁드려서 받아온 탄원서입니다. 피고인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피고인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했던 잘못을 되돌아 보고 정직한 태도로 재판에 임해야

“피고인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줄여 가며 전해 준 편지들이고, 제가 한명씩 찾아가 부탁드려서 받아온 탄원서입니다.

피고인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피고인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했던 잘못을 되돌아보고 정직한 태도로 재판에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까지 피고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자 피고인은 제게 마음을 열어 주었고 솔직한 태도로 재판에 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좌측 필자 배연관 해군법무관, 우측 경희대 리걸클리닉 센터장 범경철 교수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까지 피고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자 피고인은 제게 마음을 열어 주었고, 정직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힘을 얻은 저는 의욕을 되찾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변론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활동중이신 선후배 분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 보신 경험이 있는 후배 법학전문대학원생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담을 위해 방문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에게 닥친 일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숨

기고 왜곡함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제3자의 사연처럼 넘기시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담당했던 피고인과 같이 법과 사회에 대한 불신감과 적대감을 숨기지 않은 상태에서 냉소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국선변호를 했던 저 외에도, 법조 직역에 나가 계신 선배 변호사님들의 수많은 경험담이자, 이 글을 읽고 계실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도 겪게 되실 일입니다.

법률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서로의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는 내담자 스스로 만든 틀을 깰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 내담자가 변호사를 신뢰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강한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저도 그 당시 만난 피고인이 마음을 열지 않고,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 제대로 된 변론을 준비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후배 분들에게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과정은, 많은 내담자를 만날 수 있고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는 리걸 클리닉 과정(법률봉사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선변호나 상담을 할 때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리걸클리닉 센터장이신 범경철 교수님을 따라, 매년 도서지역을 비롯한 무변촌(연평도, 화천군, 울릉도, 백령도 및 대청도 등)에서 법률상담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후인 올 2월에도, 저는 범경철 교수

법률가의 봉사활동은 상대방을 도움은 물론, 법과 법률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모든 법률가와, 법률가가 될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이 봉사를 통해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원통한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지만 가능합니다. 특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갑의 위치에 있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을의 입장에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 소극적이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님 및 선배이신 곽승구 변호사(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2기)와 함께 후배들을 이끌고 서해 5도의 한 섬을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서 만나 빈 분 중에도 법과 사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안고 계신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공무원인 남편이 몇해 전 순직했음에도, 순직처리가 되지 않았고 행안부나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도 해줄수 있는 것은 다 해주었다는 답변만 반복한다고 하시던 그 아주머니께서는 처음에는 화를 내시다가 나중에는 푸념을 하시더니 끝내는 함께 근무했던 남편의 동료도 대한민국 법률과 행정도 다들 너무하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2016년 1월 백령도 법률상담



그 아주머니의 안쓰러운 이야기를 들은 저는 범경철 교수님과 함께 찾아가는 법률상담의 형식으로 아주머니께서 일하는 곳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받아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서류와 유공자 카드를 본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공자 카드에는 “순직”이라 표기되어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질의회신에는 “보상금 00원을 수령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 아주머니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레 여쭙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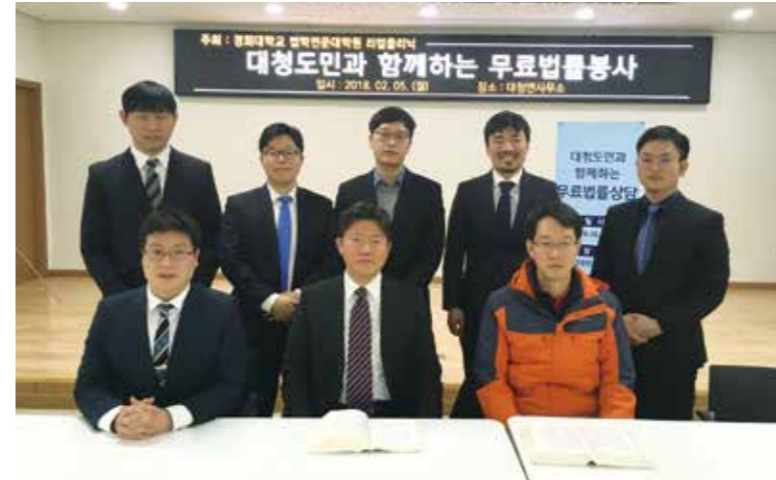
“어머님, 여기 유공자 카드에는 순직이라 되어 있는데, 어쩌서 순직처리가 안 되었다 하시지요?”

“그게, 카드에만 순직으로 나와 있지, 유공자 연금을 안 줍니다. 몇 천만원 정도의 보상금만 받고 끝이었어요. 남편 동료들도 도와준다고 하더니 그거 받고나니 끝이고, 유족연금이란 국가유공자 연금은 둘다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제서야 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함께 받을 수 있었는데(현재는 관련 규정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는, 이미 받은 일시금 외에도 추가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국가법령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드리고, 관련 법률을 보여 드리며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처음에는 약간 아쉬워 하셨지만 금세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여태까지 남편 동료들이, 남편의 순직 처리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나라는 남편 사후에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제 오해였네요, 남편 친구들도 나라에서도 해줄수 있는 것은 다 해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담자였던 아주머니의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결해드리지는 못했지만, 마음의 짐을 털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



앞줄 맨 왼쪽 필자 배연관 해군법무관, 앞줄 가운데 경희대 리걸클리닉 센터장 범경철 교수, 앞줄 오른쪽 곽승구 변호사.

같아, 범경철 교수님과 경희로스쿨 리걸클리닉 회원들 모두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그 섬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법률과 재판을 불신하고 혐오할 뿐 아니라, 법률가에 대한 경멸의 태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법률은 사회 구성원이 만든 약속이기에, 그 사회 구성원인 국민이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면 법률도 힘을 잃고, 법률가 역시 직업적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법률이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은 물론, 공정하게 집행되리라는 국민의 믿음과, 법률을 다루는 법률가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법률도 법률가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국선변호를 하며 만났던 피고인이나, 서해 5도에서 법률상담을 하며 만난 아주머니처럼 법률과 법률가를 불신하던 사람 한명 한명이 마음을 열어준다면 법과 법률가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는 바뀔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의 봉사활동은 상대방을 도움은 물론, 법과 법률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모든 법률가와, 법률가가 될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이 봉사를 통해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원통한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지만 가능합니다. 특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본인이 법률문제의 당사자

가 될 때, 그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겁을 낼 수밖에 없고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법과 법률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인권존중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회에 있는 모든 법률가의 책무일 뿐 아니라,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신 여러분 모두 나누게 될 책임입니다.

글의 서두에서 언급하였던 제 피고인의 운명에 대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탄원에 마음을 돌린 피고인의 솔직한 참회와, 피고인의 심경과 범행에 이른 과정의 안타까움을 하나하나 설명한 저의 최종 변론을 재판장께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인지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제게 감사를 표하는 피고인에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와 법은 당신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디다. 법이 피고인을 버리지 않았기에 저를 피고인에게 보내준 겁니다. 오늘의 일을 잊지 마시고,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피고인이,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만난 이후, 법률가와 법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기를,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기를 소망합니다. [창](#)

#### 해군 법무관 배연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률가가 되어야겠다는 사명으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배연관 법무관은, 대북접경지에 대한 무변촌 법률봉사활동 중 군 법무관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현재 해군 법무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생활 중 로리뷰 학생편집장으로 민법, 노동법, 인터넷 영역 등 다방면에 대한 논문을 써 왔으며 청해부대에 자원하여 법무 참모로 활약한 후 현재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CBT 시험을 도입하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신동운



CBT 제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시험방식은 꾸준히 발전해서 몇몇 시험에서는 휴대폰, 태블릿 등 각종 전자기기를 통해 시험을 치르는 UBT(Ubiquitous Based Test)까지 도입하고 있다.

“형 손 다쳤어요? 갑자기 무슨 파스를 손에 붙이고 다녀요?” 변호사 시험을 두 달 여 앞 둔 로스쿨 3학년들의 손목은 항상 파스로 무장이 되어있다. 운동선수도 아니고 공부만 하는 로스쿨 생들에게 부상이 웬 말이나 싶지만, 의외로 손목부상은 로스쿨 생들에게 흔한 일이다. 왜냐하면 독특한 시험방식 때문이다.

선택형 즉 객관식으로 평가하는 다른 시험들과는 다르게 변호사시험은 객관식과 더불어 논술형 시험이 포함되어 있다. 논술형 시험은 수기로 답안지에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그 분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스쿨 학생들의 손목은 남아나지 않는다. 21세기인 현재 IT강국인 한국에서 아직도 조선시대 과거시험처럼 수기로 쓰는 시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CBT(Computer Based Test)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CBT 제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시험방식은 꾸준히 발전해서 몇몇 시험에서는 휴대폰, 태블릿 등 각종 전자기기를 통해 시험을 치르는 UBT(Ubiquitous Based Test)까지 도입하고 있다.

CBT방식은 기존의 전통적인 PBT(Paper Based Test)방식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시험운영적인 관점에서 비용과 시간의 문제이다. 현행 PBT 방식은 시험을 치르고 나면 답안지를 복사해서 채점

위원들에게 배분하여 채점을 하게 된다. 일일이 사람이 채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과목별 시험유형별 채점위원이 총 100여 명 가까이 된다. 이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 수준은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그에 비해 CBT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면 채점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도 상당부분 감소될 수밖에 없다. 변호사 시험의 채점방식은 논술형이라고 하여도 그 논리의 흐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나누어진 채점기준표에 따라서 특정 단어나 판례문구·조문 등을 적시할 때마다 점수를 추가해 나가는 가점방식을 택하고 있다. CBT로 시험을 치르고 그것을 전자문서화 한 형태라면 현행 채점 방식은 컴퓨터를 통해 자동화할 수 있다. 물론 그 후에 채점위원이 마지막으로 검수를 하는 작업을 추가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현재 100여 명 가까이 되는 채점위원의 숫자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새로운 CBT 시험의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것은 일회적인 고정비이다. 그러나 현행 방식에서의 채점위원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에서 주관하는 다른 논술형 시험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들이는 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체로 변호사시험은 1월 초에 치러지고 시험 결과는 4월 초에 나온다. 시험과 결과 발표

CBT 평가방식은 PBT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렇게 학생들의 순수한 법학 실력으로만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고, 수험생들의 타고난 Physical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사이에 3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더 대규모로 치러지는 공무원시험·대학수학능력 시험결과 발표가 시험일 2주 뒤에 발표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는 시험인원등 기타의 문제라기 보단, 논술형 시험이 가지고 있는 채점방식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개월이라는 엄청난 시간적 간격은 수험생 그리고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에게 무형의 손실을 가져다준다. 수험생 입장에서 자신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 없고, 관련 부처에서는 직원들을 다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다. 이러한 것들은 회계장부에는 나타나지 않는 기회비용들이다. 만약 자동화된 채점을 진행하고 2차적으로 채점위원이 점검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시험일에서 성적 발표까지 3개월이 걸리는 현행 시험제도에 비해 채점시간 역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

둘째, 시험의 형평성 문제이다. 로스쿨 내에서는 답안지의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하여 일명 고시체를 연습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는 글씨체가 성적에 반영된다는 불안한 믿음 때문이다. 시험의 형평성을 담보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이란 많이 아는 사람과 조금 아는 사람을 다른 기타요소를 배제하고 구분하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리가 느린 사람이 있듯, 타고나게 글씨 쓰는 속도가 느린 학생도 있고, 글씨체가 너무 나빠서 알아보기 힘든 사람도 있다. 변호사 시험의 제한시간은 절대적으로 부

족하고 답안지에 직접 손으로 글씨를 써야한다는 특징이 있기에 이런 기타 요소들이 타 시험에 비해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CBT 평가 방식은 PBT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렇게 학생들의 순수한 법학 실력만으로만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고, 수험생들의 타고난 Physical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직접 손으로 문서를 작성해왔던 옛 세대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창시절부터 공부나 과제 업무를 하면서 많은 문서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해 왔고, 졸업 후 실무에 나가서도 손으로 글씨를 써가며 서면을 작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바쁘게 변화하듯이, 시험방식도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방식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문제는 당국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



# 중국 화감법률사무소 실무수습 후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정으뜸



이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실무 경험을 쌓으며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 지원 동기 및 선발 절차

평소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터라 중국에서 실무수습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북경 소재 화감법률사무소에서 인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고 동계 실무수습에 지원하였습니다. 국문 및 영문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후 담당 교수님과 면담을 거쳐 선발되었습니다.

실무기간은 2주이며 정확한 날짜가 지정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편한 날짜를 물어봐주시기 때문에 숙소나 비행기 스케줄을 고려하여 날짜를 지정하면 됩니다. 해외 실무수습이라고 하여 의사소통에 대한 걱정을 갖게 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중국어 및 영어 구사능력만 갖추면 언어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실습내용

중국의 경우 12월 말에는 당해 연도의 사건이 모두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겨울에 의뢰인들이 새롭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1, 2월에는 대체로 사건을 마무리한 변호사님들은 휴가를 가는 분위기였으며, 사무실에 계신 변호사님들께서도 업무량에 지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1월에 실무수습을 갔기 때문에 제가 맡은 업무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당 변호사님께서 정리된 판결문을 제공해주셔서 그것들을 읽어보며 중국의 판결문 작성 방법과 판결문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 문장 등

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민사와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업무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였으며, 한국보다 퇴근 시간이 빨라 저녁 시간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인턴에게 개인공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컴퓨터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변호사님들과 인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중국의 법체계를 설명해주셨는데 한국의 그것과는 사뭇 달라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참고로 인턴 담당 변호사님께서 한국어에 능하시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국인 변호사님들은 회사 내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퇴근 후 일상생활에서도 혹시나 어려움이 없을까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며, 덕분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중국 법원도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 법원의 분위기와 전혀 달라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법원의 크기가 크지 않았고 한 명씩 신체 및 가방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줄을 길게 서서 한참 기다린 후에야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판사와 직접 대면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모습도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며 중국 사법제도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외에도 변호사님들과 사적인 대화를

직접 중국에 가보지 않았다면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얻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외국의 법률 문화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그 나라에 가서 보고 듣는 것만큼 좋은 경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눌 기회가 많습니다. 첫째 날에는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인사를 나누었고 둘째 주 금요일에는 다 같이 환영식을 해주셔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매 점심시간마다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친목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진로 고민에 대한 상담도 해주시고 중국에서 일하는 것의 장·단점을 말씀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맺으며

직접 중국에 가보지 않았다면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얻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외국의 법률 문화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그 나라에 가서 보고 듣는 것만큼 좋은 경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실무 경험을 쌓으며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해보았던 일들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 만큼 방향을 이용하여 다양한 실무수습을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창**

# 특허·상표소송의 절대 강자를 찾아라!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 1. 대회 목적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관련 분야 실무 역량을 갖춘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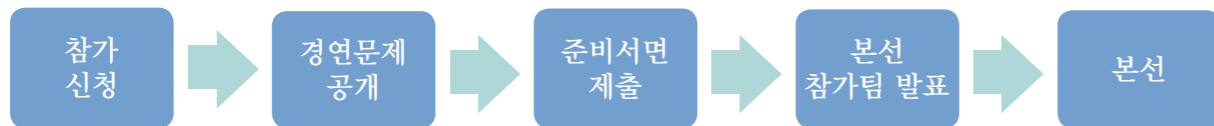
## 2. 경진 분야 및 문제 출제

-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 특허권·상표권의 무효여부와 특허권·상표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는 사례형 문제

## 3. 참가 자격

-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 동일 법학전문대학원생이 3인 1팀을 구성하여 참가

## 4. 대회 프로세스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팀 접수를 받은 후, 준비서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준비서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한 팀은 본선 경연을 펼치게 된다.
- 본선 참가팀은 원고·피고로 나뉘어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실제 심결취소 소송절차에 따라 변론을 진행한다.
- 특허법원의 판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등이 재판부를 구성해서 쟁점파악 능력, 변론의 논리력, 내용의 충실성 등을 평가해서 시상한다.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관련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특허법원과 특허청은 지난 2014년부터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Korea Patent Moot Court Competition)'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35개의 참가팀 중 24개팀(특허 16개팀, 상표 8개팀)이 본선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editor. 박소희

## 5. 제5회 서면심사 문제

특허 분야	문제
특허 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김발명'은 명칭을 '페트 용기 손잡이 구조'로 하는 발명(대한민국 등록특허번호 제1234567호,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등록특허권자이다.</li> <li>2. '김발명'은 2018.1.18. 특허심판원에 '박실시'를 상대로 하여, '그립형 손잡이를 갖는 페트병'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고 '박실시'가 이를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li> <li>3.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8당123호로 심리한 다음, 2018.5.15. 「피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였고,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이 아니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김발명'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li> <li>4. '박실시'는 이 사건 심결에 불복하여 2018.5.25. 특허법원에 '김발명'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li> </ol>
상표 분야	문제
상표 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식회사 맥도날드는 1988.12.5.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우유, 돈육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빅맥"으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번호를 받았다.</li> <li>2. 왕만두 주식회사는 2015.4.29.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만두, 나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왕맥"으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번호를 받았다.</li> <li>3. 주식회사 맥도날드는 2017.7.1. 특허심판원에 2017당3000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있어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①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무효사유와 ②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무효사유 및 ③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는 무효사유가 그것이다.</li> </ol>

## 6. 수상 내역

구분	특허 부문	상표 부문
특허법원장상	서울대 (황정호, 정영섭, 최수정)	충북대 (윤선진, 이규석, 이에나)
특허청장상	충남대 (김진울, 김병진, 공민진)	성균관대 (김우천, 김도연, 김다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	서울대 (강민경, 서준호, 이태헌)	—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전남대 (이시윤, 정한솔, 홍채영)	—

### 제5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우승팀

## ‘특허부문 우승: 서울대팀 / 상표부문 우승: 충북대팀’

#### Q. 수상소감을 간단히 이야기해주세요.

▶서울대 : 방학 기간 동안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대회를 준비하였는데 대상을 타게 되어 기쁩니다. 다른 경쟁한 팀들도 많았는데 저희 팀이 수상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북대 : 저희 팀원들은 모두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대회를 계기로 그 분야에 한발 더 다가간 것 같아 뿌듯합니다. 또한 상위 2팀에게만 주어지는 특허법원 연수 기회도 얻게 되어 매우 기대됩니다.



특허부문 우승: 서울대팀 / 상표부문 우승: 충북대팀

#### Q. 팀을 구성하게 된 계기를 비롯해 팀원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 저희 팀은 팀장 황정호, 팀원 최수정, 팀원 정영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인 저는 약사 출신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변리사 출신입니다. 팀 구성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 과학기술법학회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법학회에서는 매년 특허소송변론 대회에 팀을 꾸려 나갔었는데, 이번에도 학회 내에서 알음알음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충북대 : 저희 팀원은 충북대 로스쿨 10기 윤선진, 이규석, 이예나입니다. 저희는 같은 OT조에 속해있어서 입학 초부터 친하게 지냈고, 우연히 3명 모두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어서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Q. 특허/상표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대 : 우선 저희 팀 모두 학부에서 약학, 기계공학 등 이공계 베이스를 지닌 학생들이어서 특허 쪽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상표보다는 이공계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저희 팀이 특허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북대 : 팀원 모두 상표법에 관심이 있었고 특히 윤선진 팀원과 이예나 팀원의 경우 입학 전 지적재산권법 관련 회사의 상표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에도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 더욱이 상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Q. 이번 대회 문제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았나요?

▶서울대 : 이번 5회 특허 부문의 문제는 페트병 손잡이 구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1) 이 사건 심판의 이익이 있는지, 2) 선행발명 1, 2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 3)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보호에 속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패소한 원고가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선행발명3을 추가하여 다시 위와 같은 쟁점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각 팀들은 원·피고 측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변론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1) 실시 부분에서는 현재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된다고 보았고, 2) 자유 실시기술의 항변과 관련해서는 선행발명과 확인대상발명에서

페트병 손잡이가 위치가 다른 점, 요철부가 위치한 곳이 상이하다는 점, 손잡이의 전후방부 곡률 구성이 다르다는 점, 가압 홈 간의 간격이 상이하다는 점, 홈에 손가락이 삽입되는 것과 손가락 끝단만 걸리는 구성으로 상이하다는 점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3) 권리범위와 관련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의 ① 돌기부, ② 상부를 향해 경사진 기울기를 갖는 구성, ③ 내측으로 절곡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① 걸림홈, ② 수평축과 평행한 구성, ③ 내측으로 갈수록 급격한 곡률을 구성과 각각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다면 균등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북대 : 상표 부문의 문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왕맥’이 선등록상표 ‘빅맥’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0호, 11호 후단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원고 측과 피고 측의 각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쟁점은 이전년도 문제와 달리 문제 상에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조항을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Q.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변론했나요?

▶서울대 : 저희는 피고 팀을 맡게 되었는데, 주변론에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모든 쟁점에 대해서 가능한 언급하며, 쟁점을 놓치지 않고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변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자 노력했습니다. 이후 최종변론에서는 피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유실기술과 관련해서는 결합곤란성을, 권리범위와 관련해서는 과제해결원리가 다르지 않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충북대 : 본선 및 결선에서 저희는 피고 측으로서 제7호와 관련하여 ‘맥’이 요부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점 및 관념상 비유사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이 부분에 대한 논거를 특히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10호와 관련하여서는 선등록상표 ‘빅맥’의 저명성 획득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 Q.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서울대 : 팀원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그것을 합의하여 하나로 담아내는 것이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검토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대 : 초안 작성 후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특허소송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서면을 작성하기 힘들었고, 과제를 해

결해나가면서 법리적인 의견 충돌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제출 기일 전날 새벽 3시까지도 전면적인 수정이 이어졌을 만큼 여러 번의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 Q. 각 단계(서면심사, 본선)를 잘 준비하기 위한 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서울대 : 서면심사에 있어서는 가능한 모든 쟁점을 다뤄 쟁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안 작성 후에는 모든 팀원들이 번갈아 가며 검토를 해가면서 글을 다듬었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본선과정에서는 대본을 가능한 외워서 실제 PT과정에서 판사님들과 아이컨택을 하면서 변론하는 것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변론과정에서 판사님들이 발언하는 사람과 아이컨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론함으로써 저희의 주장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충북대 : 서면심사-서면에서 일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항상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상 서면을 팀원들과 분담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전체적인 통일성을 해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분담하더라도 작성 중간 중간 팀원들과 서로 맡은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선-피피티 작성기한이 결선일보다 3-4일 전이므로 참가자들이 피피티 작성에만 치중하고 발표와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표할 때 피피티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피티 자료 준비 시부터 발표와 병행해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희는 서면과 동일한 순서로 피피티를 구성하고, 큐카드 없이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여 발표하는 등 재판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준비하였는데 이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 Q. 제6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우들에게 한마디해주세요!

▶서울대 : 특허소송 변론대회는 문제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 이번 대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본선에 참가하는 모든 팀에게 소정의 상금을 주고, 대체로 상금도 매우 많은 편입니다. 로스쿨 생활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꼭 참가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충북대 :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재판장님 앞에서 변론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정성용 학생

# 약자들을 변호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정성용 학생에게 있어서 로스쿨에서의 생활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과는 180도 다른 날들의 연속이다. 같은 꿈을 꾸는 학우들이 곁에 있고, 원하던 법학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 행복하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를 변호하는 법조인이 되자는 확고한 의지와 방향성을 정립하게 된 것만으로도 소중한 결실이다. editor. 박소희



**Q 법조인의 꿈을 꾸는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A** 법조인의 꿈을 처음 꾸는 것은 중학생 때였는데요. 그 당시 부모님께서 법률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마음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변호사가 되어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Q 사법시험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법시험 공부를 하다가 불현듯 취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약 3년 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하였지만 계속 1차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밀려왔습니다. 심신이 너무 지치기도 하였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깊은 고민 끝에 책을 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취업준비를 시작하여 건설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다행히 법

무팀에 배치가 되어 전공을 살릴 수가 있었고, 5년 동안 소송관리,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등의 업무를 통하여 법적 분쟁에 관련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Q 직장생활을 5년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로스쿨 진학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로스쿨 입학에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직무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다양한 쟁점을 가진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 항상 새로운 경험을 했고, 함께 일하는 직장 선후배도 좋은 분들이 많아 회사생활이 나름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입학에 결정하게 된 것은 결국 어렸을 때부터 품고 있던 꿈을 포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항상 마음 한쪽에 공허함이 느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변호사가 되어 법률가로서 누군가에게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비록 그 당시 안정된 생활과 삶은 가치가 있고 만족스러웠지만, 현재에만 안주하여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꿈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로스쿨 입시를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약 반 년 동안 퇴근 후 시간을 쪼잠이 내어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Q 로스쿨 3년 과정 중 절반이 지났는데요. 로스쿨에서의 지난 시간은 어떠했나요?**

**A**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웃음). 경희대 로스쿨 최종 합격 발표를 확인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 이상이 지났네요. 로스쿨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점을 꼽자면 그동안 하고 싶었던 법학공부를 좋은 환경에서 원 없이 할 수 있다는 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다는 점 등 여러 가지가 있

대청도에서 2박3일간 상담을 하면서 주민 분들이 조금 더 쉽게 법률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면 자신의 권리를 억울하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올해 2월 초에 서해 최북단 섬 중 하나인 대청도에 2박3일간 무료법률봉사활동을 다녀온 것입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상담활동을 진행하였는데, 그곳에서 상담을 하면서 주민 분들이 조금 더 쉽게 법률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면 자신의 권리를 억울하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때의 활동을 통하여 향후 법률가가 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과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생각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공부만 하기에다 빠듯했을 텐데, 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로스쿨에서 1년간 지내면서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공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 또한 도움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을 하던 중 어느 조직에서와 마찬가지로 로스쿨에서도 다수의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학생들을 대표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학교 측과 여러 민원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할 학생회장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기 및 선후배들의 학교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제 자신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여 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Q 일각에는 여전히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하는데요. 사법시험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로스쿨 제도와의 비교를 한다면요?**

**A** 사법시험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로스쿨 제도의 장점은 학교에서 실무주의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로스쿨에서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된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 금수저만이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는 사회 일각의 인식을 상당 부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 직장인도 할 수 있다! 정성용 학생이 알려주는 직장 다니면서 로스쿨 입학하는 꿀팁

잘 구비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로스쿨에서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된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 금수저만이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는 사회 일각의 인식을 상당 부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함으로써 제가 잘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도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도 장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Q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요?

A 로스쿨 졸업 후 구체적인 진로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회에서는 법률가가 맡을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그 역할들 중 어느 옷이 저에게 가장 잘 맞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 곳곳에 많이 존재하고, 비용, 접근성 등의 문제로 법률가의 조력을 받지 못함으로써 억울한 일을 겪는 법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대청도에서 진행한 무료법률봉사활동에서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률가가 된다면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변호하고 이와 같은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창**

#### ○ 최대한 문제를 많이 그리고 집중하여 풀어볼 것.

저는 수회 분이 쌓여있는 리트 기출문제 및 시중에 출간된 모의문제들을 가능한 모두 풀어보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다보면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접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자신이 약한 유형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 전략적인 시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문제를 푸는 매 순간 마다 실제 시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맞추어 집중하여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맞닥뜨리게 될 조금함이라는 마음과 미리 친해져 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 틀린 부분은 반복하여 곱씹을 것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풀다보면 틀린 부분을 또 틀리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직 그 문제의 유형에 익숙해지지 않은 것으로, 실제 시험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면 또 틀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번 틀린 문제는 여러 번 반복하여 학습함으로써 그 문제의 유형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주변의 도움을 받을 것.

리트는 암기과목이 아니라 이해하고 추리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만 풀기 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움이라 함은 강의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스터디를 구성하여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리트시험 후 스터디를 조직하여 서로의 자기소개서를 돌려가면서 첨삭을 받았고, 면접도 실전처럼 진행한 후 구성원의 피드백을 통하여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처음보다 한층 자연스러운 자기소개서와 면접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 ○ 사실과 경험에 기반하여 준비할 것.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자연스럽게 풍성한 스토리를 제시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심사하는 교수님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BOOK

## 형사법의 성(性)편향



〈형사법의 성(性)편향〉은 2003년에 제1판, 2004년에 제2판이 발간된 후 약 15년 만에 전면개정판으로 다시 발간되었다. 전면개정판은 저자인 조국 교수의 원래 입장을 유지하면서, 제2판 이후 이루어진 형법 개정의 긍정적 변화와 여전히 한계를 분석·평가하여 제1,2장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또한 제1-2판 이후 발표됐던 위력·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최저연령 상향 문제에 관한 글 등을 추가하였다. 특히 최근 미투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폭행·협박·위력 없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금지론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저 자 : 조국 판매가격 : 19,000원  
 판매처 : 온·오프라인 서점

##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정답률 수록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

지난 8월에 시행된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영역별 문제와 해설을 담았다. 문제별로 정답률을 수록해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역별 전문가의 해설을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제작대상** : 공법, 형사법, 민사법 - 선택형, 사례형에 한함

**판매가격** : - 2018년도 제2차 : 단행본(10,000원)  
 - 택배비 4,000원(단, 4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신청방법** : 상시주문

1. 교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lawschool@leet.or.kr) 송부
2. 입금계좌(우리은행 1005-303-018484 삼영문화사 이준규)로 입금



# 로스쿨법안 국회통과 운동에 대한 회고와 소회



변호사 · 전 로스쿨비대위 상임공동대표 · 전 건국대 법대학장 김영철 교수



법조인 배출기관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한다)이 출범한 것이 2009년 3월이므로 금년은 그 출범 10주년을 맞는 해이다. 많은 논란 속에 출범한 로스쿨이 이제 유일한 법조인 배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로스쿨법안(정식명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운동에 관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아울러 여러 어려움을 뚫고 로스쿨법안을 통과 시킨 경과를 “회고” 형식으로 기록에 남겨 향후 로스쿨 발전에 참고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펜을 들게 되었다.

1994년도부터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시스템에 관한 개혁논의가 있을 때마다 로스쿨이 그 대안이라는 공감대는 어렵지 않게 형성되었지만, 실제로 로스쿨법안이 정부안으로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된 것은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5년 10월이다. 오랜 진통 끝에 회기마감 3분 전인 2007. 7. 3. 23:57 법사위 통과없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되어 재석 187인, 찬성 149인, 반대 18인, 기권 20인으로 통과를 본 로스쿨법안은 사실 정부원안이 아니고 한국법학교수협의회·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사법개혁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로스쿨 비대위(정식명칭: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의 노력으로 국회에 의하여 수정된 법안이었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당시 사법개혁의 가치를 들고 마련한 정부안이었지만, 로스쿨 교육을 담당할 대학과 올바른 로스쿨을 갈망하는 시민의 시각에서는 입안과정에서 법학교수나 절대다수 시민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밀실회의에서 법조단체의 의견만

을 반영하여 무늬만 로스쿨일 뿐, 실제로는 사법개혁과 거리가 먼 ‘특권법조’의 기득권 연장 법안에 다름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로스쿨을 추진하되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특권법조가 아닌 국민위주 법률서비스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올바른’ 로스쿨법안으로 수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일치된 인식아래 이 공동목표를 함께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2006. 2. 9. 로스쿨 비대위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당시 한국법학교수회장 이기수 고려대교수,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회장 이철송 한양대교수, 명지대법대학장 조병운교수, 시민단체 대표 김상곤이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석종현 단국대교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정용상 부산외대교수, 김민배 인하대학장, 변해철 한국외대학장, 이상수 한남대교수, 집행위원으로 김규하 경기대학장 등 11명의 법과대학장으로 구성하였다. 약 4개월 후 후임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필자가 이철송 학장의 뒤를 이어 로스쿨 비대위 상임공동대표가 되었다. “변호사 3,000명 배출”이 주된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였지만, 로스쿨인가 기준완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국고보조 장학금제도 설치, 예비시험제 도입 등도 공동추진 과제였다.

‘3,000명’이라는 숫자는 해마다 3천명씩 20년간 뽑아야 변호사 수가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한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2006. 2. 14. ‘정부 로스쿨법안 전면 저지와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전국 법과대학교수 659인 선언’을 필두로 수정된 로스쿨법안이 통과된 2007. 7. 3.까지 1년 5개월 동안 100여회가 넘는 성명 및 논평발표, 수십 차례의 기자회견·의견서 및 청원서 제출, 두 차례에 걸친 대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사법개혁 전국 3000km 대장정, 12월 칼바람 속 700시간 1인 시위, 30일간의 촛불문화제, 법과대학장 및 교

당시 사법개혁의 가치를 들고 마련한 정부안이었지만, 로스쿨 교육을 담당할 대학과 올바른 로스쿨을 갈망하는 시민의 시각에서는 입안과정에서 법학교수나 절대다수 시민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밀실회의에서 법조단체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무늬만 로스쿨일 뿐, 실제로는 사법개혁과 거리가 먼 ‘특권법조’의 기득권 연장 법안에 다름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로스쿨을 추진하되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특권법조가 아닌 국민위주 법률서비스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올바른’ 로스쿨법안으로 수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일치된 인식아래 이 공동목표를 함께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2006. 2. 9. 로스쿨 비대위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수 시민단체 릴레이 단식농성, 80회이상 20만부가 넘는 속보·인쇄물발간 배포, 2회의 대규모 공동토론회 개최와 더불어 국회의장, 여야원내대표·정책위의장·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방문 설득, 조선·중앙·동아·서울신문 등 주요언론의 주간·편집국장 방문 등 끊임 없는 대국민홍보·국회설득 활동을 병행하였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로스쿨법 이것만은 지켜라”(경향신문 2007.4.27.)등 언론기고 9회, “로스쿨법안 통과로 다양한 수요에 맞춘 법학교육 이루어져야”(조선일보 2007.4.6.) 등 신문·TV·방송 인터뷰 42회 하느라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그 결과 국민 여론이 관심과 지지로 돌아섰고, 조선·동아·경향·한국 등 신문과 MBC·SBS·YTN 등 주요언론이 고비 때마다 로스쿨법안 통과를 지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사설이나 기사를 보도하였고, 특히 조선일보는 로스쿨수정법안 통과 전 날인 2007.7.2. 로스쿨 법안 통과를 반대해온 한나라당을 향해 전국 대학에 2,020억 원을 배상하라는 사설을 게재함으로써 로스쿨 법안통과를 그날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강력히 지원해 주었다. 그 이튿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로스쿨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하기에 이른 것도 위 사실의 힘이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전국 100여개의 법과대학·법학과 구성원과 국민중심 법률서비스 시대의 도래를 염원하는 시민단체가 한마음으로 뭉쳐 노력한 결과이고, 국민들의 큰 성원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러나 감격은 잠시뿐이었다. 2007. 10. 17. 로스쿨 총정원에 관하여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009년 개원 첫 해 1500명, 2013년까지 2000명으로 점차 증원”이라는 안을 국회교육위에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비대위안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었다. 전국 주요 법과대학장들은 10. 18.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 충족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의 로스쿨을 강행하면 인가신청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강력히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로스쿨비대위 상임공동대표인인 필자를 비롯하여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회장인 중앙대 장재욱 학장, 서울대 호문혁 학장, 연세대 홍복기 학장, 명지대 조병운 학장, 한국외대 변해철 학장, 조선대 양동석 학장, 성균관대 이승우 학장, 서강대 이상수 교수, 숭실대 서철원 학장, 국민대 이성한 학장, 서울시립대 김대원 법학부장, 숙명여대 박정구 법학부장, 단국대 석종현 교수 등 14개 학교 법대학장, 교수들이 참석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도 “총정원을 3200명으로 하지 않으면 강력한 공동투쟁을 하겠다”며 거들었고, 국회 교육위 위원들도 즉각 김신일 장관안을 거부

하고 10.26.까지 총정원을 다시 정하여 국회에 재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굴복한 김신일 장관은 10. 26. “2009년 3월 첫째부터 총정원 2000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로스쿨 총정원이다.

만족할 수 없는 숫자였지만, 이미 법안통과 후 상당한 시일이 흘러 바빠 로스쿨 출범을 준비해야 할 처지에 있었고, 각 대학 간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받아들여자는 의견도 상당히 있어 아쉬운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그래도 약 1주일 사이에 원안보다 500명의 정원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로스쿨 비대위의 축적된 힘과 노력이 작동된 결과라고 자위하고 싶다.

이쯤에서 몇 가지 소회를 얘기할 차례인 것 같다. 로스쿨을 운영 중인 25개 대학도 적자운영에 허덕이는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로스쿨 법안 통과에 아낌없는 참여와 성원을 함께한 사람과 단체의 노력을 늘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로스쿨에 참여하지 아니한 나머지 법과대학과 시민들에게 태생적 빛을 지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자. 로스쿨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직장인 등도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예비시험제도 도입, 경제사정이 어려운 로스쿨 재학생에 대한 국고 보조 장학금제 도입추진 등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 특권 로스쿨, 고비용 로스쿨이라는 시민의 곱지 않는 시선도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직의 사회정의 실현 주체성, 공공성에 비추어 보아서도 마땅한 일이라 생각한다. **창**



## 로스쿨 창에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로스쿨 창〉은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스쿨과 관련된 내용의 원고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로스쿨 재학생, 교수님, 외부 필진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로스쿨창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의견도 기탄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howe@leet.or.kr)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표절임이 판명될 경우 게재취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박소희 대리 02)752-2037

#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후한서(後漢書)’ 내 ‘이응전(李膺傳)’에 출처를 두는 ‘등용문(登龍門)’이란 단어는 과거 급제를 뜻한다. 이는 현대 한국에서 ‘고시’ 합격 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한국 속담도 같은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과거 사법고시 제도가 운영되던 시절 단 5명만의 합격자를 배출한 해도 있었으니, 사시 합격은 가장 빨리 ‘용’이 되는 길이었다. 이렇게 국소수로 배출되던 ‘용’들 중 다수는 더 큰 ‘용’, 즉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봉사하는 ‘법복귀족’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부를 보장받았다. 물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고졸자로 사시에 합격하여 ‘용’이 되고도, ‘용’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고군분투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참조로 ‘등용문’의 어원이 된 이응은 후한 환제(桓帝) 시절 부패한 환관세력에 맞서 싸우다가 투옥된 정의로운 관료였다(‘당고(黨錮)’의 금).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법학계는 의견을 모아 사시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학 교육의 황폐화, 40~50대까지 계속되는 ‘고시 낭인’ 현상, 법조계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필자 역시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였다.

사시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5대4의 의견으로 사시 폐지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제 로스쿨이 법률가가 되는 유일한 경로이다. 사시와 달리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다고 곧바로 ‘용’으로 대우받는 경우는 드물다. 다양한 배경과 지향을 가진 로스쿨 졸업자들은 ‘초짜 법률가’가 되어 사회 구석구석에 진출하여 실력을 쌓고 있다. 바로 이것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로스쿨 도입을 통하여 이루려 했던 바였다. 이들 중 ‘승천(昇天)’하기보다 개천을 지키고 바꾸는 ‘메기’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

로스쿨은 정치투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소모적 논쟁을 그만 두고, 로스쿨 제도의 ‘전복’과 ‘파괴’가 아니라 ‘내실화’와 ‘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고, 바다로 헤엄쳐 나가 ‘고래’가 되려는 사람도 있고,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용’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개별적으로 모두 의미 있는 추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로스쿨 자체는 애초부터 ‘용’을 만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필자는 로스쿨 도입 10년 동안 이 제도에 대한 여러 비판이 계속되어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첫째, 고졸 출신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고졸 출신도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를 통해서 로스쿨에 입학이 가능하고, 실제 그런 과정을 밟아 로스쿨에 입학하여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여 변호사가 된 사람이 상당수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 제도 하에서 놓였더라면 분명 이 길을 택하였을 것이다(참조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시를 공부하던 시절과 달리, 현재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은 70% 정도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최고이다).

둘째,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평균적 수험생을 기준으로 볼 때, 수험생 개인 또는 가족의 자력(資力)에 기초하여 장기간 공부를 해야 하는 사시 제도와 달리, 제도화된 장학금과 은행 대출을 활용하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 되는 로스쿨 제도가 비용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8년의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 1019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 입학 시 사회취약계층의 소외 문제가 제기된 후,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취약계층 대상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셋째, 로스쿨 입시 또는 로펌 채용 과정에서 ‘음서제’가 작동한다는 의심이 있다. 그러나 입시 원서에 부모의 이름이나 직업을 노출되지 못하게 하는 블라인드 면접 및 선발 규정이 제도화되었고, 헌법재판소는 7대2의 결정으로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도록 만들었다.

10년차 로스쿨에는 미해결의 문제가 있다. 엄격한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로스쿨 시험, 변시의 사시화, 변시 합격자 수의 제한과 합격률의 저하 등이 그 예이다. 그렇지만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법학계가 어렵사리 의견을 모아 내린 제도적 결단을 뒤집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로스쿨은 정치투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소모적 논쟁을 그만 두고, 로스쿨 제도의 ‘전복’과 ‘파괴’가 아니라 ‘내실화’와 ‘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 이 글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아니라 ‘로스쿨 교수’로서 쓴 글임을 밝힌다.

기사출처: 법률신문 2018-10-01



# KEB하나은행 "로스쿨 출신 신입채용때 우대... 변호사시험 탈락자도 환영"

## 이재원 인사팀장이 말한 '로스쿨 출신' 우대 이유... "지원자 너무 적어 아쉬워...올해 못 뽑으면 내년에도 채용할 것"

‘로스쿨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로스쿨 졸업예정자’

KEB하나은행은 올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우대사항으로 '로스쿨 출신'을 명시했습니다. 보통 기업들의 채용공고 우대(가점)사항은 대부분이 '사법시험 합격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공지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 이재원 KEB하나은행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장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10년전부터 도입된 로스쿨로 주요대학의 법학도가 사라지면서 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지원자가 귀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법무팀 지원업무자를 변호사로 채용하기에는 부담이 됐고요." 이재원 팀장은 "은행내부에 법률 업무 수요가 넘쳐나는데, 주요 사안별로 은행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할 법학전공 주니어 직원들이 없어 난감할 때가 많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원 팀장은 지난 8일 지원서를 마감한 결과, 홍보가 덜 때 문인지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아쉬워 했습니다. 그는 "필요 인력이 많아 지원자들의 역량이 된다면 다 뽑고 싶을 정도"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한두명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30명까지도 뽑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서류전형에서 우대를 하더라도 필기시험(10월27일 시행)에서 어느정도 합격자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쿨출신들은 일반 대학생들처럼 취업을 위한 인·적성

시험을 상대적으로 덜 했기 때문에 필기시험 통과가 만만찮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EB하나은행 측은 로스쿨 지원자가 필기 시험을 통과하면 1차 실무면접에서도 우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다급한 모양이네요.

사실 로스쿨이 생기기 전에는 법대는 취업이 잘 되는 인기학과였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에 법학도가 있었고, 학력 고사나 수학능력시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인문계출신들이 입학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년전 2009년 전국 25개 주요대학에 로스쿨이 생기면서 법대의 명성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법대가 로스쿨로 대체되면서 기업들은 법무팀에 법학전공자 대신 변호사를 배치 한 것이죠. 그러면서, 법무팀에 있는 법학전공자들은 연차가 쌓이면서 차장, 부장 그리고 임원이 됐지만, 새롭게 신입으로 들어올 법학전공자가 없게 되면서 '공백'이 오랫동안 생긴 겁니다. 그 사이 변호사들이 과거 법학전공자들이 맡아했던 자잘한 업무까지 챙겨야 해서 기업 법무팀 변호사들의 업무량은 훨씬 늘어나게 된 것이구요.

이것이 KEB하나은행이 로스쿨 출신을 채용시 우대하게 된 배경입니다. KEB하나은행측은 "변호사시험 탈락자도 이유를 묻지 않고 서류전형에서 우대할 예정"이라며 "면접에서도 가점을 주더라도 꼭 1~2명을 채용하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변호사 시험 5회 탈락자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역량이 된다면 뽑겠다고 합니다.

고 합니다.

로스쿨 출신이 이번 KEB하나은행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하면 입사후 1~2년은 영업점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점 근무를 통해 은행의 생리를 알아야 관련 법률 검토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점 근무후에는 준법지원부, 감사부 등에서 내부 통제 및 법률 검토 등의 전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략·재무·기획 등 핵심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재원 팀장은 올해 공채에서 원하는 규모의 로스쿨출신을 뽑지 못하면 내년에 다시 채용공고를 내고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기업들의 로스쿨 출신에 대한 수요는 해가 갈수록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기업내 법무팀내 법학전공자들이 대부분 시니어 차·부장으로 승진하면서 계속 공백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 삼성전자, 현대차 "3년경력의 노무 경험있는 변호사 OK!"

## 민간기업들 변호사 채용시 '대리' 이상 직급 부여

‘전문자격증(변호사)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필기전형 만점의 10% 가점 부여’

지난달 18일까지 신입사원 채용원서를 마감한 한국동서발전의 채용공고문 내용입니다. 동서발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된 전력공기업입니다. 중부발전도 역시 필기시험에서 10%의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지난해부터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으로 인해 필기시험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지원자의 정보를 알 수 없기에 서류전형을 하지 않고 대부분 필기시험을 볼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은 변호사가 지원하더라도 필기시험에서 가점을 줄뿐 일반사원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일반 민간기업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입사하게 되면 대리 이상의 직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늘면서 대우가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까지는 대리급의 지위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초 입사지원서를 마감한 현대자동차는 변호사 채용공고를 통해 전략지원부으로 입사하면서 '대리'직급으로 우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의 주된 업무

는 △노무관련 법률 자문 계약 검토 △관련부서에서 의뢰하는 법률이슈·계약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노무 분쟁 계약의 실행점 검 및 의견제시 등 입니다. 기업들은 노조와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에 이런 복잡한 노사문제를 해결할 변호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민사·노동법 실무 지식 보유자, 노동법 분쟁 대응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올 7월 채용에서 '노동관계법 법률지식, 단체교섭 노사협약사항 검토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변호사 채용때 채용절차도 간소화 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서류전형→면접→신체검사 입니다. 일반 대졸 공채자들이 응시하는 필기시험은 생략됩니다. 다만, 기업들이 변호사를 채용할때 보통 3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취업준비때 참고해야 할것 같습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 사법부에 고한다

## -사법농단 사태 앞에서 사법의 길을 고민하며



우리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다는 의혹에 직면한 사법부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한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러나 특별조사단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는 개별 판사들의 정치 성향과 판결 내용을 사찰하였고, 특정 사안들에 대한 대법원의 요구사항을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였다. 나아가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등의 문건은 그 존재 자체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였다. 사법부가 청와대와 접촉하려 했던 시도가 어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청구권의 핵심 전제는 재판의 공정성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재판을 거래하였다는 의혹을 자초함으로써 바로 그 공정성을 위협하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법관윤리강령을  
다시금 깊이  
새겨야 한다.

였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5월, KTX 승무원들은 대법원에서 "우리가 지금 법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나"고 외쳤다. 그 비통한 외침 앞에서, 그리고 계속하여 드러나는 재판거래 의혹의 정황들 앞에서,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보장된다고 감히 말할 수 없게 되었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을 적용하는 법관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다른 시민들과 평등하다. 그러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영장들은 연이어 기각되고 있고, 이는 유례없이 상세한 기각이유들로 뒷받침되고 있다. 현 사법부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망각하고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사법의 권력은 헌법의 이념에 충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에만 그 존재가 정당화된다. 그러나 진실을 은폐하는 자와 은폐를 방조하는 자가 아울러 진상규명과 정의 실현을 지연하면서, 사법부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저버리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법관윤리강령을 다시금 깊이 새겨야 한다.

선배 법조인들이 걸어가며 남긴 판결문은 우리의 길이 되어왔다. 그 걸음을 온전히 따라가기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적어도 그 모든 문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쓰였으리라 굳게 믿었다. 그러나 오늘의 사태에 이르러 그 믿음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공정한 재판은 공허한 말로 퇴색되었고, 법관의 저울에 놓인 법치의 이념은 무게를 기능하기 어렵게 되었다.

법을 공부하며, 법에 따라, 법과 함께 살아갈 미래의 법률가로서 우리는 헌정사의 굴곡에서 사법의 길을 고민한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우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 역사에 오명을 남긴 관여 법관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사법부는 진상을 규명하고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라.

하나, 사법부는 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라. **창**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일동  
2018.10.10.

# 끊을 수 없는 단맛의 유혹... 혹시 탄수화물중독증?

밥보다 빵을 좋아하고, 밥을 먹은 후에도 케이크, 도넛 등 달달한 음식이 계속 먹고 싶다면? 당신은 '탄수화물중독증'일 수 있다. 탄수화물중독증이란, 단맛 중독이라고도 하며 정제된 설탕이나 단맛이 나는 음식을 섭취하면서도 계속 허기를 느끼는 증상이다.

도움말 \_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현 교수



## ◆탄수화물중독증이란?

탄수화물중독증이란 빵·과자·사탕 등 정제된 탄수화물 식품을 억제하지 못하고 과다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탄수화물중독증도 알코올중독·도박중독 등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뇌의 신경전달물질 분비 이상을 초래한다. 탄수화물에 중독되면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체는 단 것을 섭취해 세로토닌 농도를 높이라는 작용을 본능적으로 하게 된다. 이 때문에 탄수화물중독증 환자는 배불리 밥을 먹고 나서도 무의식적으로 군것질 거리를 계속 찾는다. 탄수화물에 중독되면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내장지방 비만이 따라오고, 이어 당뇨병·고혈압·협심증·뇌졸중 같은 대사 질환에 노출된다. 또 탄수화물중독증에 걸리면 늘 기분이 나쁘고 기력이 떨어진다.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하거나 짜증이 나게 되며, 혈당 수치가 낮기 때문에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해지는 것이다.

## 나는 탄수화물중독증일까? (탄수화물중독증 특징)

1. 빵이나 떡, 면 종류를 먹으면 양을 조절하지 못한다.
2.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낵, 케이크, 도넛 등이 먹고 싶다.
3. 식사 후 2시간 정도가 지나면 피곤해지고 불안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며 의욕이 없어진다. 이럴 때 간단한 스낵 종류를 먹으면 좀 나아진다.
4. 무언가를 먹고 싶은 생각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
5. 음식을 방금 먹은 후에도 만족스럽지 않다.
6.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상상만 해도 먹고 싶은 자극을 받는다.
7. 배가 불러 거부한데도 계속 먹는다.



글 \_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숙명여대 졸업  
현 헬스조선 취재팀장/ 기자  
현 TV조선 <내몸 사용설명서> 고정 패널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블로그)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폐암학회 언론인상 수상

## ◆탄수화물중독증 사례

### 사례 1. 간식을 입에 달고 사는 여대생 A양

빵·쿠키·탄산음료를 입에서 떼지 않는 여대생 A양(23)은 올 봄 몸무게가 84kg까지 늘면서 체질량지수 31인 고도비만이 됐다. 어머니가 집안에서 간식을 치우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차려주자, A양은 짜증을 부리며 식사를 입에 대지 않았고, 바깥에서 부모 몰래 사 먹는 군것질이 더 늘었다. A양은 최근 대학병원 비만클리닉에서 탄수화물중독증 진단을 받았다.

**식생활 분석 ->** 하루 세끼 식사 외에 간식을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탄수화물중독증을 판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주로 케이크, 쿠키, 도넛, 과자, 빵, 햄버거, 피자 등 밀가루나 설탕을 원료로 하는 음식이나 초콜릿 등 단 맛이 강하게 나는 음식들이 탄수화물중독증 유발 음식이다. 이런 음식은 단순당(당분자 1~2개로 구성)으로 구성돼 있는데, 단순당은 섭취하자마자 바로 혈당을 높여 혈당을 낮추기 위한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게 된다. 인슐린 과다 분비가 반복되면 당뇨병, 비만 등 대사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과자·빵·케이크 등 단순당 함량이 높은 간식을 즐기는 여성은 유제품을 먹는 여성보다 대사증후군 위험률이 30% 높다는 연구가 있다. 탄수화물에 중독되면 탄수화물 섭취를 중단했을 때 세로토닌 농도가 떨어져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다. 그래서 스스로 양을 줄이는 것이 힘들다. 탄수화물 식품이라도 과일·야채·견과류·콩류·잡곡·유제품·달걀·감자 등 자연 식품을 먹도록 노력해보자. 이들 식품은 소화 흡수에 시간이 걸리는 복합당으로 구성돼 있어 비만이나 당뇨병 위험이 적다.

### 사례 2. 밥과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 주부 B씨

주부 B씨(50) 평소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고 밥과 밀가루 위주로 먹는다. 그러나 살은 안 빠지고 어느 순간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고지혈증·비만·죽상동맥경화증·내당능장애(당뇨병 직전 단계) 등 5가지 질환 중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온갖 만성질환의 뿌리가 된다.

**식생활 분석 ->** 우리나라 여성은 체중을 조절한다며 고기와 기름진 음식은 적게 먹고 탄수화물은 너무 많이 먹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하루 섭취 열량 중 탄수화물이 60%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므로 단백질·지방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팀의 연구 결과 전체 음식 섭취량 중 탄수화물이 60% 이상인 여성은 대사증후군 위험률이 다른 여성보다 2.2배 높았다. 반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줄어들었다. 총 칼로리의 17% 이상을 단백질로 섭취한 여성은 12% 미만인 여성보다 대사증후군 위험이 40% 낮았다. 체중이 정상이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전체 식사량의 최대 60%까지로 제한하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탄수화물중독증 극복법

생활 속에서 탄수화물 중독을 예방하려면, 첫째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한다. 한 번에 먹는 양이 적으면 혈당이 높게 올라가지 않아 인슐린 분비를 크게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비만 등의 위험이 덜하다.

둘째, 스낵이나 케이크 등 정제 탄수화물(단순당)을 다른 탄수화물로 대체한다. 흰쌀밥보다는 잡곡이나 현미밥으로, 감자튀김보다는 찐 감자나 고구마로, 과일주스보다는 생과일을 먹도록 한다.

셋째, 무언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때 탄수화물 대신 쇠고기나 계란 등 단백질 음식을 먹어 공복감을 없앤다.

넷째, 식사 후 단 음식이나 후식에 대한 욕구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 레몬을 먹거나 양치질을 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하루 30~40분씩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과 같은 부담 없는 유산소운동을 습관화한다.

무엇보다 설탕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 흰설탕은 99.5%가 단순당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세계보건기구가 '설탕을 통해 얻는 하루 열량 섭취량을 10% 이내로 제한하지 않으면 비만 등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제한이 필요한 식품이다. 음식에 단맛을 낼 때는 설탕 대신 단맛이 나는 양파, 사과, 배 등의 천연 재료를 사용한다.

## ◆탄수화물중독증,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까?

탄수화물중독증이 중증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는 탄수화물중독증이라는 진단명이 따로 없고, 진단·치료법도 표준화돼 있지 않다. 병원에 오는 환자 대부분은 체중이 계속 늘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살을 찌게 하는 다른 질환 유무를 검사한 후, 문제가 없을 때 식사습관을 분석한 뒤 탄수화물중독증으로 진단한다.

치료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는 식이요법을 하면서 유산소운동으로 체내 지방을 태우고 인슐린 농도를 낮춰 중독 증상을 억제시킨다. 세로토닌 혈중 농도를 높이는 우울증약과 식욕억제제를 처방하기도 한다. 치료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반작용으로 더 먹게 되므로 심리치료도 병행한다. **창**

# Kingdom of Arendelle

## 아렌델 왕국의 3년



저자소개



조원익 변호사  
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유) 로고스

육아에서 애니메이션은 빼놓을 수 없는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를 찬양합니다. 그가 없었으면 아이들의 시선은 온통 부모와 부모가 주는 밥과 장난감에만 쏠려 있었을 테니까요. 잠시라도 육아 부모에게 안식을 허락하는 영상과 음악을 선사해준 故 월트 디즈니의 영혼이 천국에서 평안하길 바랍니다.



지난 추석 연휴는 대체휴무와 주말이 겹쳐서 5일 동안 두 아이와 부대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중 첫째아이는 이제 막 영상 매체에 눈이 떴는데, 특히나 하얀색과 푸른색의 조화로운 드레스가 어울리는 엘사 공주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겨울왕국의 주제곡 'Let it go'를 수없이 반복 재생하고, 어느새 영어 울렁증이 있는 제가 가사의 일부 대목을 외우면서 흥얼거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 연휴에 큰 맘 먹고 TV 유료 결제 서비스를 통해 겨울왕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무료라고 해서 세 번 봤습니다. 그런데요, 옛말에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이라고 하던가요. 세 번이나 보다보니 예전에는 못 보던 장면도 눈에 들어오고, 그와 동시에 의문점도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겨울왕국은 '아렌델'이란 왕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렌델은 세습군주가 다스리는 왕국으로 보이는데, 왕과 왕비가 아직 미성년인 엘사와 안나를 놔두고 배타고 다른 나라에 가다가 그만 배가 침몰해서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족인 탓에 별 일 없이 3년이 지났고,

언니인 엘사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여왕이 되지요. 그러다가 철 없는 동생 안나 공주가 그날 처음 만난 서던 제도의 13번째 왕자 한스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엘사 여왕이 화가 났지요. 그러다가 그동안 숨겨왔던 엘사의 얼음마법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당황한 엘사 여왕이 북쪽 산으로 숨어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Let it go'입니다.

제가 세 번이나 보면서 뇌리에 새기게 된 건 영화의 주제라고 생각되는 '진정한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이 없던 3년'이란 시간 동안 아렌델 왕국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통치했던 말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6년 말경 탄핵소추부터 탄핵심판과 사상 유래없는 탄핵 결정 후 현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국정(國政)의 공백을 경험했습니다. 촛불 시민들의 침착함과 성숙한 태도는 대한민국 역사 뿐만 아니라 인류사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의 혼란은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물며, 국가의 권력이 대부분 군주에게 집중되어 있는 세습군주제 하에서 3년이나 왕좌가 공석이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하니, 아무리 겨울왕국이 동화라지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는 법률가로서 숙제라고 생



각했습니다. 그래야 딸 아이에게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설명할 수 있을테니까요. 물론 딸에게 이런 설명을 하려면 좀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만, 언젠가 설명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정리를 시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렌델 왕국의 3년은 어떤 대단 말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인터넷 검색 결과 2가지 가설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설은 국가 원로 대신에 의한 섭정(攝政)이었을 것이다, 2설은 엘사가 미성년이지만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통치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설을 좀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2설의 가장 큰 난점은 엘사가 마법의 능력을 숨기기 위해 동생도 만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나라의 운영을 위한 각종 결재를 위해 대신들을 만나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었으리란 생각 때문입니다.

좀 더 자료를 찾아보니 아렌델 왕국이 노르웨이 왕국을 모델로 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렌델 왕국은 피요르드 협곡과 높은 산, 깊은 호수로 둘러싸여 있고, 눈과 얼음이 가득한 산이 위치한 것으로 보아 북유럽의 어디쯤이라는 생각은 가능합니다. 분석한 글에 따르면 영화 속 건축 양식이 전체적으로 바이킹의 영향을 받았고, 엘사 여왕이 대관식을 하는 날 사용되는 제례(祭禮) 언어가 고대 노르드어<sup>1)</sup>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렌델이란 명칭이 독수리의 계곡이라는 고대 노르드어의 변형으로, 실제 노르웨이에 아렌델이란 지명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현재도 세습군주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분석은 타당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르웨이 헌법은 국왕의 공백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기에서 딸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노르웨이는 세습군주제를 인정하는 헌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년의 공백기를 어떻게 했을까를 설명하기에 가장 확실한 근거라 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문헌 중에 노르웨이 헌법을 본격적으로 다룬 문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노르웨이 헌법을 국문으로 번역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다만 2013년에 작성된 '노르웨이 헌법의 특징과 정부형태에 있어서의 특징:의회의 지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저자 김용훈)을 찾을 수 있었고, 영문번역본과 위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노르웨이가 국왕의 공백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헌법은 1814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오랜 역사

1) "Sem hon heldr inum helgum eignum ok krýnd í þessum helga stað ek té fram fyrir yör... Queen Elsa of Arendelle."

를 가진 헌법으로, 세습군주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영국과 유사하지만, 영국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노르웨이는 국왕에게 행정권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고(노르웨이 헌법 제3조), 실질적으로 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노르웨이 헌법 제14조), 상거래, 관습, 모든 생활, 공공행정 규제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령(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이해됨)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습니다(노르웨이 헌법 제17조). 거기다가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노르웨이 헌법 제78조). 즉, 헌법에 기반한 군주로서의 권한행사이고 헌법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의회(Storting)가 만든 법률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단순히 왕권을 인정하기 위한 흠정헌법이 아닌 민주적인 헌법이라 하겠지만, 헌법 교과서 중 통치구조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구분을 노르웨이 왕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교과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법과 제도에 대해 연구할 때, 독일과 영국,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 노르웨이의 사례는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의원내각제의 핵심은 민주적 정당성의 일원화, 즉 의회와 행정부가 단일한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하여 구성된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면, 노르웨이는 분명 의원내각제는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의회가 국왕이 선임한 국무위원에 대하여 불신임 권한이 있어 불신임될 경우 해당 국무위원은 사직할 의무가 있는 정도의 견제가 가능하고(노르웨이 헌법 제15조), 국왕에게 의회를 해산할 권한까지는 없는 정도의 제한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왕의 실질적인 내각구성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대통령제 체제하에서 대통령이 세습군주로 대체되어 있는 형태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험했던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 상황에 비추어보면 노르웨이 왕국은 어떻게 특별한 갈등을 표출하지 않은 상태로 나라가 운영되었는지 의아할 정도인데, 이는 노르웨이가 1970년대 북해의 원전을 개발하면서 산유국이 되어 상당한 부국(富國)이 된데서 찾을 수도 있고, 노르웨이 정치문화가 우리와는 다른 형태로 발전해왔다는 역사적 배경에서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노르웨이 헌법이 우리 헌법이나 미국 헌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세습

군주제에 대한 부분에 놀라다보니 처음 질문을 있게 되었는데,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3년은 어떻게 했는지 노르웨이 헌법을 통해 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국왕이 죽고 왕위 후계자가 여전히 미성년이라면 국무회의는 그 즉시 의회를 소집하여야 하고(노르웨이 헌법 제39조), 국무회의가 헌법에 따라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노르웨이 헌법 제40조). 아버지가 없는 3년 동안 아렌델 왕국은 국무회의의 각 장관이 임시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국무회의의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1설 섭정설, 2설 권한대행설도 모두 틀린 것이고, 제3설인 국무회의의 합의제 운영설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제가 왜 이리 쓸데 없는 조사를 했는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인 '장자(莊子)'에는 쓸모없는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쓸만한 데가 없는 나무여서 나무꾼이 그 나무를 베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무쓸모'로 인해 그 나무는 오래 살아 남았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이야기도 겨울왕국과 함께 오래도록 사람들의 이야기에 회자되길 바랍니다.

법률가는 대개 현실에 의미있는 이야기를 하여야 하는 숙명이기 때문에 쓸모있는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만, 가끔은 이런 동화 속의 이야기, 그리고 판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환기해보는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이야기는 딸 아이에게 국왕이 없는 3년 동안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한 아주 쓸모없지만 재미있는 호기심에서 출발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이런 작은 호기심이 로스쿨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리걸 마인드(Legal Mind)라는 것도요. [창](#)

숨 가쁘게 달려온 2018년도 어느새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뜨거웠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였을지라도 새롭게 다가오는 2019년은 모두에게 의미 있기를. 전 세계를 아우르며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작품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맞이해 보는 것은 어떨까.



### 여성해방을 그린 헨릭 입센의 대표작 연극 **인형의 집**

노르웨이의 대표 극작가인 헨릭 입센(Henrik Ibsen)은 힘차고 응집된 사상과 작품으로 근대극을 확립하였고, 근대사상과 여성해방 운동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연극 <인형의 집>은 그를 근대극의 1인자로 만들어 준 작품으로, 연극 역사상 최초로 여성 해방의 상징을 그려 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인형의 집>은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사회에 깊이 각인된 여성의 역할에 만족하며 살던 노라가 자아를 찾아가는 내용으로, '여성'과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해 성찰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러시아의 천재 연출가인 유리 부투스프가 감각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티켓가격 R석\_70,000원, S석\_50,000원  
공연기간 2018.11.06.(화) ~ 2018.11.25.(일)      홈페이지 http://www.sacticket.co.kr/

# Play-acting

### 전세계 역대 흥행 1위 브로드웨이 뮤지컬 **라이온 킹**

전 세계 20개국,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공연되며 9천 5백만 명 이상 관람한 뮤지컬 <라이온 킹>. 영화와 뮤지컬 등 어떤 엔터테인먼트도 넘볼 수 없는 '전 세계 역대 흥행 1위'라는 독보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라이온 킹이, 탄생 20주년을 기념해서 인터내셔널 투어에 나섰다. 토니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 연출가 줄리 테이머와 오리지널 팀이 그대로 참여해 브로드웨이의 엄청난 무대 스케일과 아름다움을 가져올 <라이온 킹> 인터내셔널 투어는 전 세계 각국에서 <라이온 킹>에 출연했던 숙련된 배우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았다. 출연진의 과반수 이상이 미국, 영국, 멕시코, 브라질, 독일, 스위스, 호주, 싱가포르 등 <라이온 킹> 11개 프로덕션 출신 베테랑 배우들로 깊이 있는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공연장소 대구 계명아트센터,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기간 2018.11.07.(수) ~ 2018.12.25.(화) / 2019.01.09.(수) ~ 2019.03.28.(목)  
티켓가격 R석\_170,000원, S석\_140,000원  
홈페이지 www.thelionki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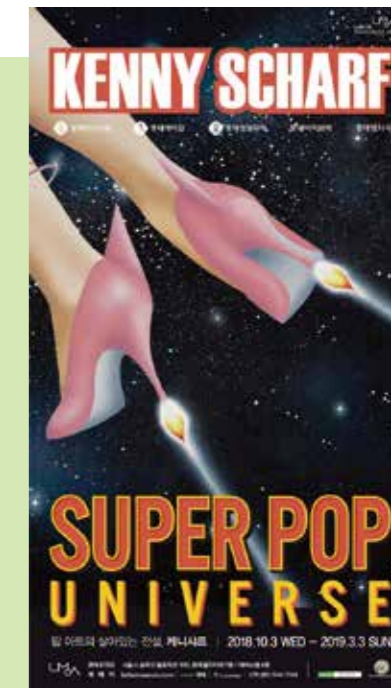


# Musical

### 팝 아트의 살아있는 전설, 케니샤프 케니샤프 슈퍼팝 유니버스

케니 샤프는 키스 해링, 장 미셸 바스키아와 함께 앤디 워홀 이후 미국의 팝아트를 대표하는 작가로 '슈퍼팝(Super Pop)'의 세계를 창조했다. 슈퍼팝은 1950~60년대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담긴 다양한 이미지들을 현실로 소환한 여러 예술기법으로 시간과 공간이 혼재되어 초현실적인 것이 특징이다. 케니 샤프는 "슈퍼 팝은 기존의 팝 아트에 전기충격을 가해 최고치의 출력을 끌어낸 것이며 내가 경험한 모든 미술 사조, 초현실주의는 물론이고 1950년대의 추상표현주의와 1960년대의 팝아트, 1970년대의 미니멀리즘 등이 내화돼 끌어올라 토해낸 것"이라고 말한다. 전시된 다양한 작품들은 30여 년에 걸친 '슈퍼 팝'의 변주를 보여준다.

전시장소 롯데뮤지엄  
전시기간 2018.10.03.(수) ~ 2019.03.03.(일)  
티켓가격 13,000원  
홈페이지 www.thelionking.co.kr



# Exhibition

###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 유니버설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1986년 국내 초연 이후 지난해까지 32년 동안 연속 매진을 기록한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이 올해도 어김없이 무대에 오른다. <호두까기인형>은 차이코프스키가 곡을 쓰고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와 레퍼 이바노프가 참여해 189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을 한 바 있다. 공연은 소녀 클라라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받은 뒤, 꿈속에서 왕자로 변한 인형과 과자의 나라를 여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두까기 인형>은 아기자기한 호두까기 인형과 장난감 병정, 사탕 요정과 과자 왕국 등 화려하고 동화적인 요소가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음악과 어우러져,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공연장소 유니버설아트센터      티켓가격 VIP석\_100,000원, R석\_80,000원  
공연기간 2018.12.20.(목) ~ 2018.12.30.(일)      홈페이지 www.universalballet.com



# Ballet performance

# LAWSCHOOL NEWS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초청 행사

10월 26일(금)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을 초청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초청행사는 25개 법전문원장 및 행정실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진행됐으며, 송석연 제주대학교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의 인사말, 제주대 법전문원의 현황 소개, 시설투어 등의 일정이 이어졌다.



## 제42차 이사회 & 제45차 총회 개최

지난 10월 26일(금)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층 교수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회 및 총회가 개최됐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이사회에는 이형규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9인이 참석하여 2020학년도 법학직성시험 시행일정, 성적 산출방식에 대한 검토 등 주요 결정 사항을 논의했다. 25개교 법전문장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2019년도 법전문 정부예산 진행 사항, 법전문 입학전형 및 장학금 지원제도 의견조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이수제, 법전문 성적평가 방법, 법전문 반수생 장학금 지원 제한 방안을 비롯해 법전문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법무부 장관과의 간담회

지난 11월 1일(목)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용구 법무실장, 이영남 법조인력과장을 비롯해 25개교 법전문대학원 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원장단과 박상기 장관은 변호사시험 개선방안과 법전문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유형 및 수준 개선 방안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 및 대안, 변호사시험의 지역 및 시험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간담회



11월 5일(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0년간 1,2주기 자체평가, 현지평가, 본평가를 경험했으며, 3주기 평가를 앞둔 시점에서 평가기준 수립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평가위원회 간담회를 가졌다. 협의회 측에서는 이형규 법전문협의회 이사장 및 원장 9인이 참석했으며, 대한변협 평가위원회 측에서는 김주덕 평가위원장 및 5인이 참석했다. 간담회

에서는 평가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지표는 제외하고 현실상황을 반영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 재정 부담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짐에 따라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평가기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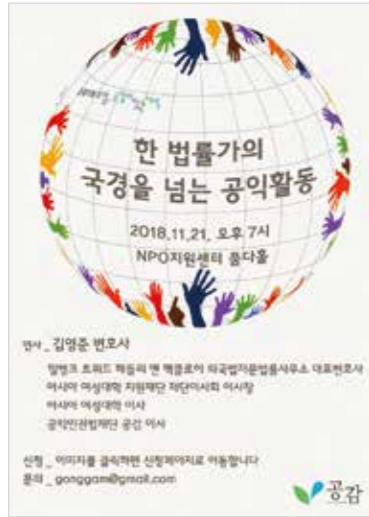
## 〈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 법률분야 교육의 전문성 강화 - 어떻게 할 것인가? 〉

-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

■ 일시: 2018년 11월 16일(금) 10:0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행사시간	행사일정	비고
10:00~10:20 (20m)	<b>[인사말 / 축사]</b> □ 인사말 - 금태섭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이형규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사회: 법전문협의회 김영기 국장
10:20~11:40 (1h20m)	<b>[주제발표 및 토론]</b> 1. 주제발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전문법률 과목 학점 이수제 도입 - 김인재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前원장) 2. 토론 - 홍석모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前원장) - 박상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선율) - 유동주 기자/변호사 (머니투데이) - 남기욱 교육이사 (대한변호사협회) - 문상연 과장 (교육부) - 박기태 검사 (법무부)	• 좌장: 건국대 법전문 이승호 원장
11:40~12:00 (20m)	[청중 질의응답]	



## 2018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한 법률가의 국경을 넘는 공익활동

■ 연사 : 김영준 변호사

### 연사 약력

- 밀뱅크 트워드 해들리 앤 맥클로이(Milbank, Tweed, Hadley & McCloy LLP)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아시아 여성대학 지원재단 재단이사회 이사장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

■ 일시 : 2018.11.21.(수) 오후 7시~9시

■ 장소 : 서울시 NPO 지원센터

■ 문의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02)3675-7740, gonggam@gmail.com

■ 참가신청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참가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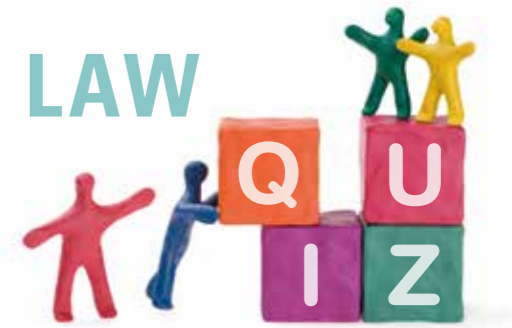
※ 간단한 다과 제공



## 법무법인 양지 신임변호사 초빙 공고



- 모집인원 : 1명
- 지원자격 :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의 경우 법정출입이 가능해야 함)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연수원성적증명서,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변호사시험 성적표  
(채용서류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채용 후 폐기예정)
- 제출마감 : 변호사 채용 확정시까지
- 서류제출처 : ksh1848@gmail.com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 문 의 : 법무법인 채용담당 강수호 변호사, Tel. 043-254-0088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01 광장빌딩 4층
- 고용조건 : 세후 월 400만 원 ~ 500만 원, 구체적인 급여는 면접시 협의, 변호사 등록비 지원, 기타 유류비 · 식사비 등 지원(법인카드), 자기사건은 인정하지 않음
- 근무시기 : 채용 후 즉시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 출처: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ㄱ. 부작위위법확인 소의 제기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취소소송과 동일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ㄴ.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무효등확인소송에서와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ㄷ. 처분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는 날', 주관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이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2.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였다도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법인을 위하여는 측면이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위 금전은 수탁자 소유로 되어 위탁자가 위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원을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⑤ 채권자가 채권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 · 교부받아 소지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담보를 위한 목적에서 위 수표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수표를 임의로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3. 자백간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피고가 소장 부분을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받고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제1심에서 자백간주의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툰다면, 자백간주의 효력은 배제된다.
- ③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더라도 자백간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④ 재심절차에서도 통상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재심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심사유를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재심사유에 대하여 자백간주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 통상공동소송에서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피고 甲이 적극적으로 다투었는데 피고 乙은 변론기일에 출석하고서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피고 乙이 변론 전체의 취지상 청구원인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다.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상균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송남대학교



승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